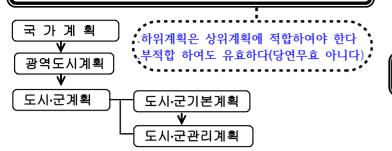
#### 토지이용계획

#### 도 시・군 기 본 계 획



- ① 도시장기발전방향 제시 종합계획
  - ② 도시.군관리계획 수립시 지침
  - ③ 구속력(x) → 행정쟁송 대상(x)
  - ④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하여야 한다.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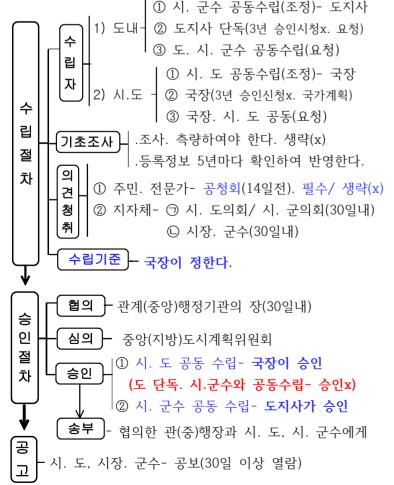
#### 광 역 도 시 계 획

-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.

#### 1. 광역계획권 지정

- 도시공간구조. 기능상호연계.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
- ① 2이상 도시의 전부. 일부 대상으로 지정
  - 시. 도 걸친 경우: 국장 도안: 도지사 지정
- ② 지정(변경)요청: 중행장, 시.도지사, 시장.군수
- ③ 국장(시.도, 시.군수 의견듣고 중도위 심의거쳐 지정)
- ④ 도지사(중행장, 시.도. 시.군수 의견듣고 지도위 심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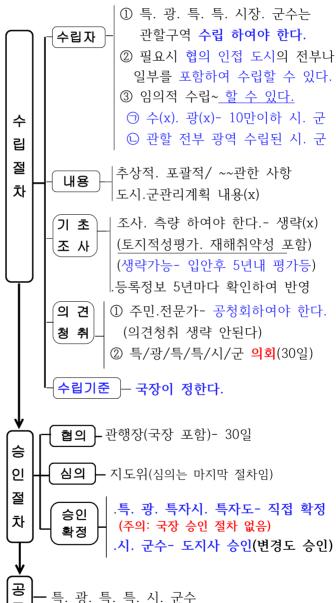
#### 2. 수립 → 승인 절차



#### 2. 수립→ 승인 절차

1. 의의

성격



#### 3. 재검토 등

1) 타당성 검토- 5년(광역은 재검토 없다)

공보에 공고한다(30일 이상 열람)

2)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. 국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1 -

#### 도 • 군 과 리 계 회 시

#### 1. 총 설

- 1) 성격 및 내용
- ① 구속적계획 →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.
- ② 광역. 기본에 부합(부적합해도 유효하다)
- ③ 내용: 용도지역. 지구/ 구역(개. 시. 수. 도. 입) / 기반시설/ 개발. 정비/ 지구단위/ 입지규제

### 2) 입안→ 결정 절차

입안자 (주민-x)

안

제

안

인

아

절

차

결

정

절

차

- ①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 ~한다.
- .2이상 걸친- 협의/협의(x)-지정(국.도)
- ② 국장(해장). 도지사 ~할 수 있다.
- 도시관리계획 도서. 설명서등 작성
- ① 주민(이해관계인 포함)- 도서, 설명서 첨부
- ② 기반. 지구. 산유개. 용도지구폐지. 입지규제
- ③ 동의: 기반(4/5). 기타(2/3)↑-국공유지 제외
- ④ 산유제안: ① 1만m'이상 ~ 3만m'미만
  - ① 자녹. 계관. 생관 일 것
  - @ 전체면적의 50%이상이 계관 일 것
- ⑤ 45일 내 통보(1회 30일 연장)
- ⑥ 비용(협의)- 전부. 일부 부담가능

필수/ 환경. 적성. 재해포함/ 위반- 위법 기초초사 모두 생략가능..... 많다.

의견청취

- |① **주민- 공고**. **열람**(14일- 60일 통보) (의견청취 생략가능하다/ 전문가 없다)
- ② 지방의회- 대령이 정한 사항(생략가능...)

수립기준 │ 국장이 정한다.

- 1. 지역. 지구. 구역
- 2. 광역시설
- 3. 기반시설
- **협의** 관(중)행장- 30일
- 심의

결정

- ① 국장(해장)- 중도위
- ② 시. 도/ 시장. 군수- 지도위

<u>.공동심의(건+도)</u>- ⑦ 지구단위계획

○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

협의. 심의 생략사항..... 많다.(가훈)

- ① 용도지역. 지구- 국, 시.도, 대도시
- ② 용도구역- ① 개발제한- 국장
  - 도시자연- 시. 도. 대도시
  - ◎ 시가화- 시.도/ 국가계획 연계- 국장
  - ② 수산- 해장 ◎ 입지- 결정권자
- ③ 기반시설- 국, 시.도, 대도시
- ④ 지구단위- 국, 시.도, 시장.군수

- ♣. 시장.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
- ①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
- ②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

결정.고시 ├ 관보 또는 공보

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- 열람기간 없다. (광역.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열람한다.) 랅

#### 3) 결정 효과

†(1) 효력발생 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(다음날- x)

(2) 기득권 보호

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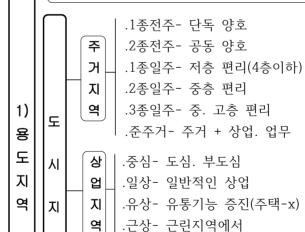
업

- ① 진행중- 계속시행(허가. 신고- x)
- ② 시가. 수산 결정- 3월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.
- **(3) 재검토 5년마다**

#### 2.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

경제적.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중복지정 안됨/ 도시.군관리계획 결정

#### (1) 종류및 지정목적



Ⅰ.전공- 중화학 공장(주택-x) 공

.일공- 환경저해 않는 공업배치 │.준공- 경공업 + 주 + 상 + 업무

|.보녹- 녹지공간 보전 녹

.생녹- 생산위해 개발유보 지 <sup>|</sup>.자녹- 제한적인 개발가능

주거. 상업. 공업. 녹지를 시.도.대도시 조례로 추가 세분지정할 수 있다.

관리)

.계획- 도시지역 편입예상

- .생산- 농림지역 지정 관리곤란

.보전- 자연환경보전진역 지정 관리곤란

┫농림 ┣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

**-**[자연]─ 자. 수. 해. 생. 상. 문. 수산

#### (2) 지정(변경. 세분) 절차

1) 원칙: 도시.군관리계획 결정절차에 의한다.

2) 특례

(국장, 시.도, 대시장)

- ① 공유수면 매립지(매립목적- 이웃 용도지역과)
- ⓐ 동일: 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이웃 용도지역 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고시는 해야 한다.
- ⑤ 다른. 2이상 이웃: 도시.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 지정. 고시 하여야 한다.
- ② 도시지역의 결정. 고시로 본다.
- ⓐ **도시지역에 연접한**: 항만구역. 어항구역
- ⓑ 국가/일반/도첨산업단지(농공단지-x)
- © 택지개발지구
  - @ 전원개발사업구역. 예정구역
  - 도시개발구역(취락지구. 도시외의 지구단위-x)
- 도 ♣.구역. 단지. 지구등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등으로 환원한다(공사완료로 인한 해제- 환원하지 않는다.)
  - ③ 관리지역 안에서
  - @ 농업진흥지역- 농림지역 결정. 고시 본다.
  - ⓑ 보전산지- 농림 또는 자연환경 결정. 고시 본다.

#### ├ (3) 지정효과

- 1) 건축제한(대령)- ① 허용 건축물 14개 지역 ① 금지 건축물 7개(준주. 상업. 준공. 계관)
- ★ <u>아파트 건축 허용지역</u>: 2종전주. 2종일주. 3종일주. 준주거. 중상. 일상. 근상. 준공업지역
- 2) 건폐율(건/대)- ⊙ 기준: 주거(5.5.6.6.5.7) .상업(9.8.8.7) .공업(7.7.7) .녹지(2.2.2) .관리(4.2.2) .농림(2) .자연환경(2)
  - □ 특례(3-자연녹지안의 개발진흥지구 /4- 개발진흥. 수산자원/6-자연공원. 취락지구 /7- 농공단지 /8- 산업단지)

#### 3) 용적률(연/대)

- 기준: .주거(100. 150. 200. 250. 300. 500) .상업(1,500. 1,300. 1,100. 900) .공업(300. 350. 400) .녹지(100. 100. 80-보) .관리(100. 80. 80) .농림(80) .자연환경(80)
- © 특례(80- 수산/ 100- 개발. 공원/ 150- 농공)

- 4)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경우(건폐율. 용적률)
  - ① 건폐율(계관 50% ↓ / 자녹. 생관 30% ↓ )
  - ② 용적률(계관 125% ↓ 완화 가능함)

#### (4) 용도지역의 기타 제한

- 1) 미지정(자연환경). 미세분(도시-보녹). (관리-보관)
- 2) 도시지역안- 🗇 접도구역 적용하지 않는다.
  - © 농취증 적용 안함. 단, 녹지안의 농지로서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적용한다.

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. 완화/ 중복지정 가능함 도시.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#### ┫(1) 종류. 지정 목적. 세분

- ① 특정
- ② 보호- 역사문화. 중요. 생태계
- ③ 방화

항. 공. 공용. 교. 군

- ④ 방**재** 시가지. 자연
- ⑤ 경관- 자연. 시가지. 특화
- ⑥ 고도
- ⑦ 개발- 주거/ 산업.유통/ 관휴/ 복합/ 특정
- ® 복합
- 2) 9 취락- 자연. 집단(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)

용 \*\*.시. 도. 대도시 조례 세분- 경관. 중요. 특정용 .시. 도. 대시장은 법령외 지구의 신설이 가능하다. .방재지구- ③ 연안침식으로 상당한 피해발생

(필수) 🗅 최근 10년내 2회 이상 재해로 인명피해

#### 지 (2) 행위제한

도

- 1) 원칙: 이법. 타 법규정 외에는 도시.군계획조례
- 2) 예외(특례)
  - ① 고도- 도시.군관리계획(고도리) 높이 초과금지
  - ② 자연취락- 국계법시행령에 의한다.
  - ③ 집단취락- 개특법 규정한다.
  - ④ 개발진흥지구- 계획 수립여부
    - 수립한 경우- 수립된 계획에 의한다.-수립하기전 까지는 조례에 의한다.
    - ① 수립하지 않는 경우- 용도지역을 적용한다.
  - ⑤ 방화- 건축법(축하공연)
  - ⑥ 기타- 도시.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
    - 보호지구- 할 수 있다.
    - ◎ 기타 지구- 할 수 없다.

역

지

1)

용

- 3 -

용 도 지 구

3)

용

도

구

역

#### 3) 복합용도지구

.건축제한만 완화. 지역범위의 1/3이내 지정

- ① <u>일주</u>: 준주거 허용(안마. 관람장. 동식물 공장. 장례식장. 위험물은 <u>제외</u>)
- ② <u>일공</u>: 준공업 허용(노유자. 단란. 아파트. 안마시술소 <u>제외</u>)
- ③ <u>계관</u>: 숙박. 제과점. 유원시설(위락중). 휴게음. 일반음. 판매시설 추가 <u>허용</u>
- 4) 자연취락 허용(4층이하에서 조례로 별도가능)
  - -단독. 1종근생. 2종근생(휴게. 일반. 제조업소.
     안마. 단란. 제외), 운동, 동식물.

창고(농. 수. 축산용). 방송**통**신, **발**전시설 교정및 군**사**.

(단.종된 운.동으로 고.통. 발.사)

(**휴.일 제.안. 단** 제외 )

.용도지역.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.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#### /(1) 개발제한구역(<mark>국장</mark>)

- ① 국방장관 요청 보안상 도시 개발제한
- ② 지정절차. 행위제한: <u>따로 법률로 정한다</u> (개 특 법)

#### (2) 도시자연공원구역(시. 도. 대시장)

- ① 도시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 제한
- ② 지정절차. 행위제한: 따로 법률로 정한다 (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)

#### (성) 시가화조정구역(시. 도/ 국가계획- 국장)

- ① **5년이상 20년 이내**. 국, 시. 도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.
- ② 기간만료 다음날 실효, 실효고시 해야 한다. (국장- 관보, 시.도- 공보/ 안해도 실효된다.)
- ③ 행위제한(국계법령)
- 도시.군계획사업- 국방. 공익상 불가피→중행장 요청 → 국장이 인정한 것만 가능
- 비도시.군계획사업-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 가능(허가 외는 모두 금지한다.)
   (공용. 국방, 주민생업, 문화재, 지하자원등)
   ✓ 시험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묻는다.

#### (4) 수산자원보호구역(해장)

- ① 수산자원보호. 육성을 위해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 지정한다
- ② 행위제한등 수산자원관리법 적용한다.

#### (5) 입지규제최소구역(관리계획 결정권자)

- ① 도시지역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이 필요시
- ② 대상지역- 다음 지역의 전부, 일부
- 도심. 부도심등 생활권의 중심지역
- ① 기반시설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지역
- © 세 개이상 노선 교차 결정지 1km 이내 지역
- ② 주거.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
- ◎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(근린재생형-x)
- ③ 협의 요청받은 관행장은 10일내 의견제시
- ④ 다른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어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 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.
- ⑤ 배제할 수 있다.(주. 부. 복. 대. 미. 대)
  - 주택의 배치○ 부설주차장 설치
  - © **복**리시설. 부**대**시설 설치기준
  - ② 미술작품 설치◎ 대지조성기준
- ®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#### ※. 기타의 행위제한

1. 개별법에 따른 행위제한

(도시계획시설은 지역, 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한다.)

- 1) 농공단지: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
- 2) 농림지역중 ① 농업진흥지역(농지법)
  - ② 보전산지(산지관리법) ③ 초지(초지법)
- 3) 자연환경보전지역중
  - ① 공원구역(자연공원법)
  - ② 상수원보호구역(수도법)
  - ③ 지정문화재. 천연기념물보호구역(문화재보호법)
  - ④ 해양보호구역(해양생태계.....법)
  - ⑤ 수산자원보호구역(수산자원관리법)

#### 2.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

- 1) 원칙: 330㎡이하 부분(도로 띠 상업 660㎡↓)
  - ① 건폐율. 용적률- 가중평균 적용
  - ② 건축제한 등- 가장 넓은 면적 지역등 적용
- 2) <u>건축물</u>이 고도에 걸친 경우 -대지. 건축물 모두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.
- 3)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
  - ①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.
  - ② 경계를 방화벽 구획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도 구 역

용

- 4 -

④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- 각 각 적용 (가장 적은 부분이 녹지로서 330㎡이하는 제외) 단,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. 방화에 걸친 경우 -고도.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.

#### (1) 의의 및 종류

- 1) 기반시설- 개념 없음(세분: 도. 광. 자~^^)
- 2) 종류
  - → 교통시설- 교통.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- x)
  - ① 공간시설- 공원. 광장. 녹지, 공공공지등
  - ◎ 유통.공급- 전기. 수도. 공동구. 시장
  - ② 공공문화체육- 학교. 청소년수련시설
  - ◎ 방재시설- 하천. 유수지. 저수지. 재해예방
  - ⊎ 보건위생- 장사시설. 도축장. 종합의료시설
  - △ 환경기초시설- 하수도. 재활용시설. 폐차장
- 3) 도시.군계획시설- 기반시설중 도시.군관리계획 으로 결정된 시설
- 4) 도시.군계획시설사업- <u>도시.군계획시설을</u> 설치. 정비. 개량하는 사업이다. <u>(기반시설을-x)</u>

#### (2) 설치 및 관리 등

#### 1) 설치

4)

IJ

λІ

설

① 원칙: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한다.

② 예외: 000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.(눈치)

#### 2) 공동구

- ① 설치 의무자: 개발사업 시행자(200만m 초과)
- ② 지역: 공<u>공주</u>택지구, <u>도청</u>이전신도시. <u>택</u>지개발지구. 도<u>시</u>개발구역. 경제<u>자</u>유구역, 정<u>비</u>구역 (*공주*가 *도청*에 *택. 시*를 *자. 비*로 타고 간다.)
- ③ 설치비용: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가 함께 부담
- ④ 공동구 설치된 경우 빠짐없이 수용해야 한다.
- ⑤ 하수도관. 가스관은 심의 거쳐 수용(심의 하까?)
- ⑥ 점용. 사용허가받고/ 점용.사용료 납부해야 한다.
- ⑦ 관리(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가 한다.)
- 비용(점용면적고려 관리자가 정함- 연2회 분납)
- ①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.
- □ 1년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한다.

#### 3) 광역시설 설치. 관리

- ① 원칙: 일반적인 도시.군계획시설 규정을 준용
- ② 예외: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가 할 수 있다. ○ 시장. 군수 협의 안되면 도지사가 할 수 있다.
  - 그리케팅이 권이 빌이 워크티스 한 사이트
  - ◎ 국가계획인 경우 법인 설립하여 할 수 있다.

#### (3) 도시.군게획사업 시행 절차

#### ① 수립자

단

계

별

집

행

계

획

- ⊙ 특. 광. 특. 특. 시. 군 수립하여야 한다.
- ① 국장.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.
- ② 시기: 🗇 결정. 고시 3개월내
  - © 타법에서 관리계획결정 의제되면 2년내 (기간내 수립 안해도 실효 안된다.

.행위제한이 완화 되는 효과가 있다.)

③ 구분: 3년이내 시행은 1단계, 3년후 시행은 2단계로 구분한다.

(매년 2단계를 검토하여 3년이내 시행할 시설을 1단계에 포함시킬수 있다.)

- ④ 관행장과 **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** 후 수립해서 **공보에 공고** 한다.
  - #. 기초. 주민의견. 심의. 승인 절차 없다.

1) 시행자: ① 원칙: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

- ① 2이상 도시에 걸치면 협의한다.
- © 협의 안되면 국장. 도지사가 정한다. ② 예외: 국장. 도지사. 비행정청
- -비행정청은 국, 시.도, 시.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\*\*.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시 면(2/3)소유하고 수(1/2)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2) 행정심판(행정심판법),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한다.
- 3) 실시계획 작성
- ① 실시계획에는 .....이 포함된다.(가훈)
- ② 2 이상 분할시행이 가능하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.
- 4) 인가: 국장. 시. 도지사, 대시장(변경: 변경인가/ 경미한 변경은 제외- 눈치)
- **5) 의견청취**: 14일 이상 열람
- 6) 조건부 인가 가능(이행보증금)- 굴비발차기 (국. 지자체. 공기. 공단은 예치 안한다.)
- 7) 의제사항:..... 많음(눈치)
- 8) 시행자 보호조치
- ① 관계 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다.
- ② 이해관계인 주소등 불분명시 공시 송달할수 있다.
- ③ 국. 공유지는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.(위반시 무효)

4)

기

반

시

설

시 계 획 인 가

 $\Box$ 

시

실

И

계

획

인 가 고 И

④ 수용 및 사용

-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는 수용.사용할 수 있다.
- ① 인접한 토지 등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. (일시 수용은 안 된다)
- ◎ 수용. 사용에 대해 이 법 규정 외에는 공 취 법을 준용한다.
  - @ 실시계획 고시를 공취법상 사업인정. 고시로 본다.
  - ⓑ 재결신청은 시행기간 내에 해야 한다.
- ⑤ 타인 토지 출입 등
- 출입: ⓐ 허가 받는다. (행정청은 허가 안 받는다).
  - ⓑ 7일전 통지해야 한다.
  - ⓒ 야간 출입시 점유자 승낙을 요한다.
- ① 일시사용, 장애물 제거, 변경
- @ 점유자등 동의를 받는다.
  - ⓑ 동의 곤란시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ⓒ 3일전에 통지한다.
- ②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한다.

(주의: 행위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.)

② 위반시 1천만 이하 과태료 처벌사유이다.

준공

|의제사항: 이법 준공검사 받으면 타 법에 의한 각종 검사 등은 받은 것으로 본다.

검사

①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.

② 국장이 시행하여 이익받은 시.도, 시.군에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.(행장과 협의 한다)

- ③ 시.도는 이익받은 시.도, 시.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. 협의하되 안되면 행장이 정한다.
- ④ 시.군는 이익받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담 시킬수 있다. 협의 안되면 도안은 도지사가 다른 시.도에 걸치면 행장이 결정한다.
- ⑤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은 50퍼센트 이하 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.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비용 의 3분의 1 범위에서 국가. 지자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(4)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

- 1)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
- ① 10년내 미설치하고 지목이 대(垈)인 토지 소유자 (실시계획인가.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시 안된다)
- ② 상대방(시행자)
- ⊙ 원칙: 특. 광. 특. 복. 시. 군수에게 할 수 있다.
- ① 예외: ⓐ 시행자 지정된 경우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.
- b) 설치. 관리 의무자 있으며 그 자에게 할 수 있다. ③ 6월내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특특시군에 통보한다.
  - → 매수결정 통보하면 2년내 매수하여야 한다.
- ④ 거부 or 2년내 매수안하면 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다.
  - 3층이하 단독주택(단독) ○ 3층이하 1종근생. 2종근생. 다만(노래연습장.
  - 안마시술소. 단란주점. 다중주택은 제외한다) ◎ 공작물
- ⑤ 대금 지급은 ⑦ 원칙: 현금으로 지급한다. 4)
  - 예외: 도시계획시설채권(지자체만 발행한다)
  - @ 원할 때/ 부재. 비업무용- 3천만 초과 금액만
  - ⓑ 상환기간은 10년 이내, 이자율은 조례로 정한다
  - ⓒ 발행절차 등 이 법외에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
  - ⑥ 매수가격. 절차 등 이 법외에는 공취법 적용한다.

#### 시 2) 시설 결정 실효

IJ

바

① 20년내 설치안되면 다음날 해제된다.(고시해야 한다)

- ② 10년이후에 실시계획 작성(인가). 고시- 5년내 재결 신청 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이 실효된다. 다만, ⑤ 시행자가 5년 지나기 전에 면적 2/3이상 소유 또는 확보하고 7년내 재결신청 안하면 7년 지난 다음날 실시계획은 실효된다.
  - 재결신청 없이 시행자가 모든 소유권확보 또는 사용권원 확보하면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.
  - ◎ 실시계획이 폐지. 효력을 잃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음에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. (고시하여야 한다.)
    - @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,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: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
    - ⓑ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 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: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

Ш

부

용

담

## 3) 해제 권고

기

반

시

(국장 결정하고 중행장 설치하는 것은 제외)

- ① 설치 필요성 없거나 10년내 설치 안된 경우
- ② 특. 광. 특. 특. 시장. 군수는 지방의회에 보고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90일내 해제 권고한다.
- ④ 지자체장은 1년내 해제 결정.고시한다.
- ⑤ 시.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면 도지사는 1년내 해제 결정. 고시해야 한다.
- ⑥ 해제해서 안된 경우에는 6월내 사유소명한다
- ⑦ 해제 안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

#### 4) 해제 입안 신청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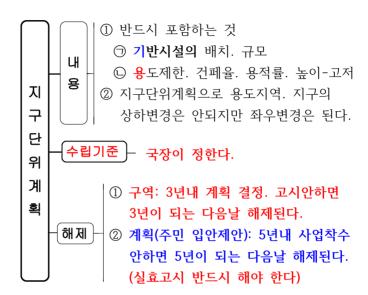
- -10년내 미설치 + 실효시기까지 집행계획(x)
- ① 해제 입안신청(소유자→ 입안자) -3월내 결정 통지(6월내 해제결정)
- ② 해제 결정신청(결정권자): 2월내 결과통보 -6월내 해제하여야 한다.
- ③ 해제 심사신청(국장): 심의 거쳐 해제 권고 -결정권자는 6월내 해제하여야 한다.

# 도 시 지 역 외 기 구 단 위 계 획 구 역

2) 개발진흥지구 + <u>대령 요건</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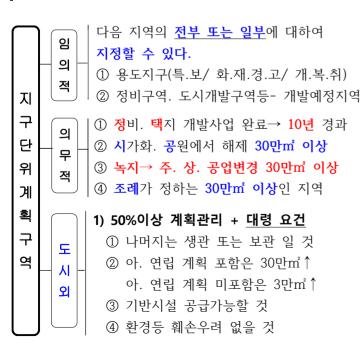
위 1)의 ②. ③. ④를 충족하고

- ① 주/ 복/ 특- 계획관리지역 일 것
- ② 산/ 복- 계획. 생산. 농림일 것
- ③ 관 도시지역 외일 것
- 3)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하려는 지역



#### 5)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

- 1)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.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한다.
- 2)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은 국, 시.도, 시장.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

#### 1) 완화규정

규

제

완

화

- ① 국계법- 건축제한/ 건폐율/ 용적률
- ② 건축법- 조경/ 공개공지/ 대지와 도로관계/ 높이제한/ 일조높이제한
- ③ 주차장법- 주차장설치/ 설치계획서 (대지분할제한. 대지안의 공지. 건축선- x)
- 2) 도시지역 안 완화기준
- ① 주차장(100%): 한옥마을 보전. 차 없는 거리
- ② 용적률(120%): 도시 + 개발진흥 + 지구단위
- ③ 높이제한(120%): 도시 + 개발진흥 + 지구단위
- ④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한도: 건(150%). 용(200%)를 각 각 초과할 수 없다.
- 3) 도시지역 밖에서 완화
- ① 도시외 지구단위에서 건축물 용도. 종류. 규모등을 완화적용할 수 있다.
- ② 개발진흥지구(계획관리는 제외)에 지정된 지구단위에서는 아파트. 연립은 안된다.
- ③ 건폐율(150%). 용적률(200%) 완화 적용할 수 있다.

- 7 -

#### 개발에 관한 부분

- 1. 개발행위 종류- 건, 공, 토. 토. 토. 물
- 2. 성격에 따른 분류
- 1) 도시계획사업: 허가 안 받는다.
  - 도시계획시설사업(국계법): 실시계획인가
  - 도시개발사업(개발법): 실시계획인가
  - € 정비사업(도정법): 사업시행인가
- 2) 비도시계획사업: 개발행위허가 받는다.

#### 1.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

- ① 건축물의 건축
- ② 공작물의 설치
- ③ 토지 형질변경-절.성.정.포장/매립
- ① 인접토지의 관개·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
- ①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
- ◎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
- 단, 전. 답 상호간 변경은 허가안 받는다.
- ② 허가대상인 옹벽설치 또는 2m이상 절토. 성토. 수반되는 경우
- ④ 토석채취

개

행

위

허

가

- ⑤ 토지분할(건축물이 없는 토지분할)
- ⑥ 물건 적치: <u>녹지. 관리. 자연안에서 1월이상</u> 적치(농림지역은 허가 대상 아니다)

#### 2. 허가를 요하지 않는 개발행위

- ① 도시.군계획사업인 개발
- ② 재해복구. 재난수습: 1월내 신고
- ③ 건축허가.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
- ④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(육상어류양식장은 허가를 받는다.)
- ⑤ 형질변경
  - 조성 완료된 대지에 건축. 공작물 설치
  - 국가. 지자체가 공익상 직접 시행
- ⑥ 토지분할: ⑦ 사도개설 허가 받은
  - ① 토지일부를 공공용지. 공용지로 하기 위한
  - ◎ 행정재산 용도폐지. 일반재산을 매각. 교환
  - ② 토지일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
- ♣.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안 받는다.
- ① 사업기간 단축(연장은 허가 받는다)
- ② 면적 5%이내 축소(확대는 허가 받는다.)

1. **처분:** 신청후 15일내 처분한다.

2. 의.청- 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의견들어야 한다.

②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들어야 한다.

#### ·8. 허가기준

1) 형질변경 면적이 적정할 것

① 주. 상. 자녹. 생녹: 1만m<sup>2</sup>미만

② 공업: 3만m³미만

③ 보녹: 5천m<sup>i</sup>미만

④ 관리. 농림: 3만. 3만m'미만

⑤ 자연환경: 5천㎡미만

-관리. 농림은 3만㎡미만에서 조례로 정한다.

♣ 2이상 용도지역 걸치면- 각 각 지역 적용한다.

-총 면적이 큰 지역 면적을 초과하면 안된다.

- 2) 도시.군관리계획,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할 것
- 3) 도시.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
- 4) 주변환경. 경관과 조화 이룰 것
- (5) 기반시설. 용지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
  - ♣.자금조달계획은 허가기준 아니다.

#### <u>4. 허가의 세부기준</u>

- ① 시가화용도: 주. 상. 공업(허가기준 적용)
- ② 유보용도: 계관. 자녹. 생관
  - -심의 거쳐 허가기준 강화. 완화적용할 수 있다.
- ③ 보전용도: 생녹, 보녹, 보관, 농림, 자연
  - -심의 거쳐 허가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.

#### 5. 조건부 허가

- ① 조경 등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. (허가신청자 의견청취 하여야 한다.)
- ②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- ⊙ 사유:(굴. 비. 발. 차. 기)

-굴착. 비탈면조경. 발파. 차량통행. 기반시설 설치

① 국. 지자체. 공공기관. 공공단체는 예치안한다.

#### 6.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

- 1) 심의 사항 많음
- 2) 생략 사항도 많다(눈치와 가훈)
  - ① 지구단위계획.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 안한다.
  - ②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심의 안한다.
    - . . . 개발행위는 심의 한다? 심의 안한다?

.....

등

개

발

햇

위

허

가

절

자

- 8 -

#### 7.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

- (1) 국, 시.도, 시. 군→ 심의→ 지정. 고시(국, 시.도는 시장. 군수 의견청취하고 심의)
- 2) 제한사유- 도시.군관리계획상 필요
- ① 녹지. 계관- 수목. 조수. 유량농지(3년)
- ② 환경. 경관. 문화재 훼손우려(3년)
- ③ 기본. 관리계획 수립(3년+연장 2년/ 최장5년)
- ④ 지구~구역 지정(3년+연장 2년/ 최장5년)
- ⑤ 기반~구역 지정(3년+연장 2년/ 최장5년)
  - ●. 주의: 연장할 때는 심의 안한다.
- 3) 해제: 기간내라도 사유소멸하면 해제해야 한다.

#### 8.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의제사항

- ①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타 법의 인. 허가 등 받은 것으로 본다.(...많다)
- ② 관행장과 협의하기 때문이다.(협의기간 20일)

#### 9. 위반시 조치

개

발

행

위

허

가

절

차

등

- ① 원상회복명할 수 있다. 불응시 대집행 가능
- ②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이행보증금 사용가능

#### 10. 준공검사

- ① 건축. 공작물. 형질변경, 토석채취 만 (토지분할과 물건적치는 준공검사 안한다)
- ② 건축물은 건축법 사용승인 받으면 이 법 준공검사 안 받는다.
  - ③ 이 법 준공검사 받으면 타 법 준공검사등 받은 것으로 본다(미리 협의하기 때문)

#### **/11. 성장관리계획구역**(특. 광. 특. 특 시. 군수)

- ① 녹지. 관리. 농림.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상이다 (난개발예상지역- 주거 상업. 공업지역은 제외한다.)
- ② 수립절차: 주민과 지방의회(60일) 의견청취-협의(30일)-심의- 고시(절차가 다 있다)
- ③ 성장관리계획(구역 수립절차와 동일하다)
- 건폐율- 계관(50%), 기타(30%)
- 용적률- 계관(125%)
- © 5년마다 재검토한다.

#### . 개발밀도관리구역

- 1) 주거. 상업. 공업에서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 → 심의→ 지정. 고시 **(주민 의견청취 없다.)**
- 2) 구역 명칭. 구역 범위/ 건폐율. 용적률 강화범위 변경도 심의한다.(심의 생략 없다)
- 3) 지정기준: 국장이 정한다(2년이내. 20%이상)
- 4) 효과: 건폐율 또는 용적률 대령 범위내 강화한다 (용적률 50% 범위내 강화한다.)

#### ◉. 기반시설부담구역

#### -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안된다.

#### 1.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

-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 (대학은 제외한다)
- ②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- 지정하여야 한다.
  - 행위제한 완화. 해제되는 지역
  - ① 개발건수가 20%이상. 인구 20%이상 증가
- ③ 지정기준: 국장(최소 10만㎡ 이상)
- ④ 절차: <u>주민 의견청취</u>→ 심의→ 지정. 고시

#### 2. 기반시설 설치계획

- ① 수립절차: <u>주민 의견청취</u>→ 심의→ 수립. 고시
-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.
- ③ 구역 지정하고 1년내 수립 안하면 다음날 해제 (기 원 합니다~~^\*^)

#### 3.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

- ① 200㎡(기존면적 포함)초과 신축. 증축 (철거 후 신축시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대상)
- ② 납부의무자: 건축행위 하는 자
- ③ 예정통지: 30일→ 15일→ 15일
- ④ 부과 및 납부
  - 허가후 2월내 부과
  - 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
  - ◎ 원칙(현금. 카드). 예외(토지로 물납 가능하다)
  - ② 신청- 연기(1년). 분할납부(2년)
  - ♣.민간부담률: 100분의 20으로 하며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 가능

#### 4. 설치비용의 운용. 관리

- ① 관리: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한다.
- ② 운용: ③ 해당 구역에 사용한다.
  - 집행 잔액: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

#### ♣. 공공시설의 귀속

- 1. 신설- 관리청 무상귀속
- 2. 기존(종전)- ① 행정청: 무상귀속
  - ② 비행정청: 설치비용 범위내 무상양도 가능하다

#### ★. 청문 사유

- -사적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취소. 말소처분시 한다.
- 1. 개발행위 허가 취소
- 2. 실시계획 인가 취소
- 3.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취소

- 9 -

# 시 설 의 설

치

기

반

# 도 시 개 발 법

- 1. 수립: ① 원칙: 지정권자 구역 지정시 수립한다.
- ② 예외: 구역 지정후 수립할 수 있다.
  - ① 개발계획 공모 ② 자녹. 생녹(30%↓)
- © 도시외- 관리(계관. 생관. 보관). 농림. 자연환경
- ⓐ 국가균형발전(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)
- ◎ 주. 상. 공 면적 합계가 전체면적의 30%이하
- 2. 변경: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할 수 있다.
- 3. 내용: ①...많다. 지구단위계획 제외하고 다 있다.
- ② 순. 대. 사. 기는 구역 지정후에 포함할 수 있다.
- (<u>순</u>환개발, 생활안정<mark>대</mark>책, 수용사용, 밖 기반시설설치)
- 4. 환지방식 동의기준: 시행자가 <u>국. 지자체</u>인 경우를 제외하고 <u>면적(2/3)와 총 수(1/2)</u>동의받아야 한다. .변경도 동의 받음. 경미한 변경은 안받음(...눈치)
- 5. 복합기능 갖는 도시(자족도시): 330만㎡이상
- 6. 개발계획은 광역.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.
- 7. 수립기준: 국장이 정한다.

#### .'♣ 동의자 수 산정방법

- 1. 면적산정시 **국.공유지 포함(개~포^^)**
-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인, 집합건물이면 구분소유자 별로 각 1인
- 3. 공람공고후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공람공고일 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4. ~~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다.
- 5. ~~ 소유자 변경- 변경전 소유자 기준으로 산정 6. 사유토지 동의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. 공유지

#### 1. 지정권자 등

- (1) 지정권자
- 1) 원칙: 시. 도지사. 대도시시장
  - ① 직접: 계획적 개발 필요시
  - ②둘 이상 시. 도 대도시 걸친: 협의하여 지정 할 자를 한다.(협의 안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)
- 2) 예외: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.
  - 중. 국. 정부, 긴급. 협의
  - ① 중행장(장관)이 요청(제안-x)
  - ② <del>국</del>가가 개발
  - ③ 정부출연. 공공기관장 30만㎡이상 제안 (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지정제안 못함)
  - ④ 천재지변등 긴급히 시행
  - ⑤ 시.도. 대도시시장간 협의가 안될 때

#### 2) 지정요청

- ① 시(대도시제외). 군. 구는 시. 도지사에게 요청
- ② 중행장(각부 장관)은 국장에게 요청
- 3) 지정제안 ① <u>국. 지자체. 조합을 제외한</u>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도, 시,군.구에 제안할 수 있다
  - ② 2이상 시. 군. 구 걸친 경우- 큰 지역에 걸친
- ③ 민간시행자 제안: 면적 2/3이상 동의요함
- ④ 제안받고 1월내 결정 통보(1월 연장가능)
- ⑤ 비용: 협의하여 전부. 일부 부담할 수 있다.

#### 2. 지정절차

기초조사→ 의견청취→ 협의→ 심의→ 지정.고시

- ① 기초조사: 임의적(할 수 있다)
- ② 의견청취: 공람 또는 공청회
- ③ 공고(신문과 홈피/ 10만㎡ 미만은 공보와 홈피)
- © 100만m<sup>2</sup>이상: 공람후 공청회개최 하여야 한다.
- ③ 면적 100만㎡이상 이면 국장과 협의한다.
- 3. **대상지역**(면적)등

두

시

개

발

옄

- ① 도시안 ⑦ 주. 상. 자녹. 생녹- 1만㎡이상
  - © 공업- 3만m'이상
- ② 도시외: ① 원칙: 30만m'이상
  - ① 예외: 아파트. 연립 포함~ 10만m'이상

#### 4. 구역의 분할과 결합

- ① 분할: 효율적인 추진위해 필요시 각 각 1만㎡ 이상
- ② **결합**: 경관보호 필요시(하나라도 1만㎡이상이 포함)
- 5. 구역 지정 효과
- 1)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. 다만 취락지구와 도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
- 2) 개발행위 허가를 요함(건, 물. 토. 토. 토. 죽)
  - ① 건축(가설. 대수선. 용도변경) ↔
  - ② 공작물 설치 ↔ 농수산물 생산이용 간이공작물
  - ③ 형질변경 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
  - ④ 토석채취 ↔ 자연훼손 않는 토.취
  - ⑤ 토지분할 ↔
  - ⑥ 물건적치(1월이상) ↔ 남겨둔 대지에 물건적치
  - ⑦ 죽목의 벌채. 식재 ↔ 관상용 죽목 임시식재 (경작지에서 식재는 허가를 받는다.)

.재해복구. 재난수습 응급조치 허가 안 받는다.

- @ 진행중 사업은 30일내 신고하고 계속한다.
- ⑤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.
- ⓒ 시행자 의견청취 하여야 한다.

# 도시개발구역

λГ

개

발

사

업

의

계

횓

개

계

힐

도시개발구역

#### 6. 구역 해제의제- 다음날 (3실 2개 5330)

- ① 구역 지정. 고시후 3년내 실시인가신청(x)
- ② 공사완료 공고(환지방식- 환지처분 공고)
- ③ 구역 지정. 고시 2년내 개발계획 수립.고시(x)
- ④ 개발계획 수립. 고시후 3년내 실시계획인가 신청(x) 단, ③. ④는 330만㎡이상- 5년 .<u>해제</u>: 용도지역 환원. 지구단위 폐지된다.

(단, ②의 해제는 그러하지 않음)

1. 시행자(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.)

- ① 국. 지자체
- ② 공공기관(토공. 수공. 농공, 관공, 철공)
- ③ 정부출연기관
- ④ 지방공사

여기까지 공공시행자

- ⑤ 토지소유자
- ⑥ 조합(전부 환지방식인 경우) 등 ~⑩
- -②, ③은 국장에게 구역 지정제안이 가능하지만 ④는 국장에게 구역 지정제안을 할 수 없고 특도. 시. 군.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.
- -전부 환지방식은 소유자.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.

#### 2. 시행자 변경

- ①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내 미착수
- ② 구역지정 고시후 1년내 실시계획 인가신청(x)
- ③ 시행자 지정 취소, 실시계획인가 취소
- ④ 시행자 부도. 파산 목적달성 어려움

#### 3. 조합

#### 1) 설립

① 토지소유자 7인 이상, 지정권자 인가받는다. 변경시 변경인가 받는다.

(단,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.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 한다.)

- ② 동의: 면적(2/3)와 소유자 총수(1/2)
  - 국공유지 포함
  - ① 수인이 공유하면 대표자 1명.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별로 각 각 1명
  - ◎ 공람 공고 후 분할하여 증가- 공고 전 기준
  - ② 사유 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받음
  - ◎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동의철회 가능하다.
  - 📵 동의한 자에게 취득하면 동의승계 된다.
- 2) 성격: 법인/ 30일내 등기- 등기하면 성립한다. 이 법 외 민법중 사단법인 준용하다.

#### 3) 구성

- ① 조합원- ③ 토지소유자(동의 불문)
  - © 면적관계 없는 평등한 의결권, 공유는 1인으로 하되 집합 건물은 구분소유자별로 각 1인
  - © 공람. 공고후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 취득한 자는 의결권 없다.

#### ② 임원

- 조합장: 조합을 대표. 총회. 대의원회 등 의장
- ① 이상: 조합장 보좌. 조합 사무를 분장한다.
- ◎ 감사: 조합사무 및 재산. 회계에 관한 사항 감사
-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,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◎ 조합장.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.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- ⊌ 임원은 그 조합, 다른 도시개발조합의 임원.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<u>다음날</u> 자격 상실한다. (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어도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.)
- ③ 대의원회

λΙ

계

ρI

가

고

λІ

- 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인 이상 둘 수 있다.
- ① 총회 권한 대행 못 한 것- 개. 임. 환. 정. 해
- ⓐ 개발계획수립. 변경 ⓑ 임원선출(조. 이. 감)
- ♣참고(행정심판): ① 행정청은 행정심판법에 의한다.
  - ② 비행정청(특히 조합)은 지정권자에게 한다.

#### 5. 사업 대행

- 1) 공공시행자는 주택건설업자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. (사업대행 시행사는 경쟁입찰 방식 선정)
- 2) 대행 업무(
- )
- ① 실시**설계** ② **부지**조성공사
-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분양
- 6. 실시계획인가(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.)
- 1)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**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**.
- 2) 의견청취: ① **국장은 시. 도. 대시장 의견을 듣고** ② 시. 도는 시. 군. 구청장 의견을 듣는다.
- 3) 효과-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.고시된 본다.
  - @ 실시계획 작성= 지구단위계획 작성
  - ⑤ 실시계획 고시= 지구단위계획 결정.고시
  - ②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종전 결정은 고시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.
- ③ 의제사항: .....많다(협의기간 20일)

실

계

힐

수

용

사

용

밧

식

화

지

식

시 행 방 식 1. 수용. 사용: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필요

2. 환지: 대지로서 효용증진/ 토지의 교환. 분합/ 지가 높아- 수용. 사용이 곤란

3. 혼용방식: 분할/ 미분할 시행<u>할 수 있다.</u>

#### 1. 수용. 사용

-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필요시 수.사할 수 있다.
- ② <u>민간시행자는</u> 면(2/3)소유하고 총수(1/2)이상 동의를 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이법 규정 외는 공~취~법을 준용한다.
- ④ 세부목록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.

#### 2. 토지상환채권

- ① 소유자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지급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발행할 수 있다.
- ② 1/2초과 해서는 안된다.
- ③ 민간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아야 한다.
- ④ 발행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한다.
- ⑤ 기명증권이다. 양도가능하며 취득자는 명의변경 하여야 대항력을 갖는다.
- ⑥ 이율: 발행자가 정한다./ 질권 설정 가능하다.

#### 3. 선수금

- ① **지정권자 승인 받아** 대금의 **전부**. **일부**를 받을 수 있다.
- ② 공공시행자는 소유권 10% 확보해야 한다.
- ③ 민간시행자는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말소하고 공사진척률이 10%이상 진행되어야 한다.

#### 4. 원형지 공급

- ① 지정권자 승인받음,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.
- ② 전체 면적 1/3이내 공급가능하다.
- ③ 원형지는 10년 이내에서 대령이 정한 기간동안 매각 안된다. ⑤ 공사완료 5년
  - ① 계약체결 10년 중 빠른 날 매각 가능하다. 다만, 국가. 지자체/ 이주용 주택용지. 공공용지등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매각이 가능하다.
- ④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- 학교. 공장용지는 경쟁입찰 (2회이상 유찰시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.)
- ⑤ 공급가격= (감정가격 + 기반시설 공사비) + 협의
- ⑥ 공급계약 해제하는 경우 2회이상 시정요구 한다.

#### 5. 조성 토지 공급

1) 공급계획서-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.(인가-x)

#### |2) 조성토지 가격평가

- ① 감정가격(산술평균가격)으로 한다.
- ② 감정가격이하로 정할 수 있다.
  - -학교. 폐기물처리시설 .사회복지시설(무료시설)
  - -공장(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소유자가 설치)
  - -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(공공시행자가 공급)
  - -호텔업(공공시행자 공급 200실 이상).
  - -이주단지 조성 .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장등

#### 3) 공급기준

- ①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.
- ② 기반시설 원활설치 필요시 공급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#### 4) 공급방법

- ① 원칙: 경쟁 입찰
- ② 예외
  - 추첨방식- 공. 주. 단
    - ⓐ <mark>공</mark>공택지. 공장용지
    - ⓑ 국민주택규모의 **주**택건설용지
    - © 330㎡이하의 단독주택용지
  - ♣ 수의계약 공급하렸으나 신청량이 공급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방법에 따른다.
  - ① 수의계약: .....많다.
- 1. 내용(환지방식 시행하는 모든 시행자 작성)
- ① 환지설계
- ② 필지별 환지명세
- ③ 필지별,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명세
- ④ 체비지. 보류지 명세
- ⑤ 입체환지 계획~
- -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,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2. 작성기준

1) 원칙: 적응환지

위치. 지목. 면적. 토질. 수리. 이용상황. 환경

- 2) 예외
- ① 부지정
  - 동의. 신청(임차권자등 동의 받아야 한다.)
  - ① 과소 토지 발생방지 위해 직권 부지정
- ② 조정: 증환지. 감환지 할 수 있다.
- ③ <u>입체환지(소유자 신청</u>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.)

수 용 · 사

방 식

용

= - 12 -

환

지

처

분

④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수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비용충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(체비지집단 지정요구는 특도. 시. 군. 구가 한다)

⑤ 감보률(=부담률)

환

지

계

횓

환

지

예

정

지

지

처

분

보류지 - (시행자 소유 + 무상귀속) x 100 총면적 - (시행자 소유 + 무상귀속)

- ⊙ 평균토지부담률은 50%초과할 수 없다.
- 지정권자가 인정 60%까지 할 수 있다.
- ◎ 소유자 2/3↑동의하면 60%초과 할 수 있다.

#### 3. 조성 토지 가격평가

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 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②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저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.
- 4. 환지계획 인가
-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도. 시. 군. 구의 인가
- ② 변경시는 변경인가 받는다.(단. 경미한 변경 제외)

1. 지정: 시행자는 필요시 지정할 수 있다. (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같이 지정해야 한다.)

#### 2. 지정 효과

- ① 종전 토지 사용.수익 금지되고 예정지를 사용.수익할 수 있다.
- ② 사용. 수익 개시일의 별도지정이 가능하다.
- ③ 종전 토지 소유자.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권리행사 방해해서 안된다.
- ④ 시행자는 체비지 사용.수익. 처분할 수 있다.
- ⑤ 용익권자 권리조정(목적달성 불가능시)
  - ⊙ 장래에 대해서 증. 감 청구(60일내) 가능
  -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.
- ⑥ 환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사용. 수익 정지처분 할 수 있다.

- (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한다.)
- .지정권자는 공사완료 공고하고 60일내 한다.

#### 2. 환지처분 공고 효과

- ①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.
- ② 환지부지정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.
- ③ 입체환지 처분: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. (저당권도 다음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으로 본다.)
- ④ 체비지(시행자). 보류지(환지계획 정한 자)-다음날에 소유권를 취득한다.
  - -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.
- ⑤ 행정상.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 미치지 않는다.
- ⑥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한다. (실익 없는 지역권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.)

#### 3. 환지등기

-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14일내에 촉탁 또는 신청한다.
- ②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환지등기일까지 다른 등기 할 수 없다.(단, 공고일전 등기원인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할 수 있다)

#### 4. 청산금

- 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 된다.
- ② 징수. 교부시기- 🗇 원칙: 환지처분 공고후 ○ 예외: 환지부지정 토지는 환지처분전 교부
- ③ 분할 가능/ 강제징수 가능/ 공탁 가능
- ④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- 1. 지정권자의 준공검사-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2. 공사완료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 가능하다
- 3. 준공검사 받으면 실시계획 인가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준공검사등 받은 것으로 본다.
- 4. 준공전 조성토지 사용금지 된다.(체비지는 제외) 다만 지정권자 사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.

1. 발행자: 시. 도지사- 행장 승인 받는다. 2. 소멸시효: 원금 5년. 이자 2년

3. 상환기간: 5~10년 조례

4. 이율: 시.도조례

5. 발행방법: 등록 또는 무기명증권

6. 매입자: 수용방식 공공시행자 도급계약 체결자 /민간시행자/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

#### 1. 환지처분 절차

- ① 공사완료 공고. 공람(14일)
- ②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- 필요 조치
- ③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한다.
- ④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받고 60일내 환지처분한다.

개 채 권

준

공

검

사

도

λГ

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. 정비사업: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

- ① 주거개선: ⑦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
  - © 기반시설 극히 열악 © 단독. 다세대 밀집
- ② 재개발: ③ 기반시설 열악 心 상업. 공업지역
- ③ 재건축: 기반시설 양호
- 2. 노후. 불량 건축물
- ① 멸실. 붕과 안전사고 ②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
- ③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보수비용이 크다.
- ④ 20년이상 30년미만 경과 미관저해. 구조적결함
- 3. 정비기반시설: 도로. 상하수도. 주차장. 공동구. 공원. 녹지. 광장. 하천. 소방용수시설. 비상대피시설. 가스공급시설. 지역난방시설
- 4. 공동이용시설: 놀이터. 마을회관. 공동작업장. 구판장. 세탁장. 화장실. 수도. 탁아소·어린이집 경로당 등(유치원- x)
- 5. **토지등 소유자- (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소유자)** 정비구역 안에 있는
- ① 주개. 재개: 토지. 건축물. 지상권자
- ② 재건축: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(지상- x)
- 6. 주택단지-(재건축사업 범위)
- ①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
- ② 건축법 허가받아 아파트. 연립을 건설한 토지
- 7. 대지: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
- 8. 주공등: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
- 1) 수립자: 특. 광. 특. 특. 시장(군수- x)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수립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수립 안할수 있다.
- 2)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한다.
- 3) 절차: 주민공람(14일)- 지방의회(60일)-관행장과 협의- 지도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.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는다.
- 4) 확정후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. 단. 경미한 변경은 공람. 의회. 협의. 심의. 승인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.(눈치와 가훈) -20%미만 변경도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.
- 5) 작성기준은 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.
- ◆.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패스하고 8.8.8로~

#### 1. 재건축 안전진단

- ① 정비계획 입안권자: ①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
  - ① 1/10이상 동의 받아 요청(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)
- ② 진단요청시 30일내/ 진단실시 결정/ 요청자 통보/
- ③ 대상: 주택단지내 건축물(진단 제외 건축물)
  - 붕괴. 사용금지. 진입도로등 입안권자 인정
  - 노후불량 기준을 충족한 잔여 건축물
  - © 시특법상의 D. E등급인 건축물
- ④ 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의뢰→ 진단결과보서 제출
- ⑤ <u>입안권자는</u> 안전진단결과 도시계획등 고려하여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후 시. 도에게 보고 한다.
- ⑤ 국장, 시.도는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기술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. (60일내 결과보고도- 1회 30일 연장가능) -비용은 요청한 국장. 시.도지사가 부담한다.
- ⑥ <u>시. 도가</u>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<u>취소요청</u>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.

#### 2.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

#### 1) 정비계획

정

НΙ

계

획

과

정

Ы

구

역

지

정

- ① 입안: 특. 광. 특. 특. 시장. 군수. 구청장
- ② 주민(30일↑)- 지방의회(60일↑) 의견청취-경미한 변경은 생략 할 수 있다.
- ③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할 수 있다.
- ② 제안사유:.....많다
- ⓑ 60일내 반영여부 통보(30일 연장가능)

#### 2) 정비구역 지정

- ①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.
- ② 군수.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하여 특.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.
- ③ 심의 거쳐 지정.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.

#### 3) 정비구역 해제

- ① 정비구역 등 해제: 하여야 한다.
  - ⊙ 예정구역: 3년
  - ① 재개. 재건축: 추진(0)- 2년/ 추진(x)- 3년
  - ◎ 재개발: 소유자 시행- 5년
- ② 연장: ○.○.○ 도래전에 3/10 동의 받아 연장요청 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정비구역 해제되면 용도지역 등은 이전 상태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
용 어

정 의

> 기 본 계

> > 횓

시

햇

자

와

시

공

자

선

정

# 정 비 구 역

- 3) 지정. 고시 효과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. 고시로 본다.
- ② 개발행위 허가를 요함(건. 물. 토. 토. 토. 죽)
- ⊙ 건축(가설. 용도변경) ↔
- 공작물 설치 ↔ 농수산물 생산 간이공작물
- ⓒ 형질변경 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
- ② 토석채취 ↔ 자연훼손 않는 토.취
- ◎ 토지분할 ↔
- ④ 물건적치 ↔ 남겨둔 대지에 물건적치
- ③ 죽목의 벌채. 식재 ↔ 관상용 죽목 임시식재(경작지에서 식재는 허가를 받는다.)

.재해복구. 재난수습 응급조치 허가 안 받는다.

- @ 진행중 사업은 30일내 신고하고 계속한다.
- (b) 개발행위 허가 의제/ 시행자 의견청취
- ⓒ 대수선은 허가대상이 아니다.

#### 1. 시행방식

- 1) 주거환경개선사업(기. 수. 환. 관. 혼용 가능)
  - ① 기반(시행자)→ 건축(소유자)- 현지개량방식
  - ② <del>수</del>용 ③ **환**지 ④ <del>관</del>리처분계획(주택. 부대. 복리)
- 2) 재개발사업(관. 환)
- ① **관**리처분계획(건축물등) ② **환**지
- 3) 재건축사업: 관리처분계획(주택. 부대. 복리. 오피) \*\*.오피스텔은 준주거와 상업에서만 가능(3/10이내)

#### 2. 사업 시행자

시

행

방

식

과

시

행

자

- 1) 주거환경개선사업
- ① 기 방식: 시장. 군수등/ 주공등 지정(과반수동의)
- ② **수. 환. 관**: 소유자(2/3) + 세입자(과반수 동의- 단,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1/2이하면 안받음)
  - @ 시. 군수등 직접
  - ⑤ 주공등, 50%초과 출자법인- 지정
  - ⓒ 위 ⓑ와 공동(건설업자. 등록사업자)
- ③ 천재지변 등 긴급시 동의(x)- 시. 군수등/ 주공등 -이 경우 시. 군수등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
#### 2) 재개발사업

① 조합시행/ 공동시행(과반수 동의)

공동시행: 시. 군수등, 주공등/ 건설. 등록. 대령

- ② 소유자 시행(20인 미만)/ 공동(과반수)- 상동
- 3) 재건축: 조합시행/ 공동시행(과반수 동의)

공동: 시. 군수등, 주공등/ 건설. 등록

-재건축사업을 소유자 시행시 조합설립하여야 한다.

#### 4) 재개발. 재건축사업의 예외 시행자

- ① 공공 시행자- 시,군수등. 주공등 지정
  - ② 사유: 천재지변 긴급.....
  - ⑤ 시.군수등은 직접시행. 주공등 지정을 고시 한다→ 고시 다음날에 추진위 승인. 조합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.(고시 한다)
- ② 지정개발자
- ③ 사업대행
- @ 분쟁, 과반수가 요청시 소유자, 조합을 대신
- ⑤ 시.군수등 직접. 주공등, 지정개발자를 지정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ⓒ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귀속된 건축물등을 압류할 수 있다.

#### 3. 시공자 선정

- ① 조합: 설립인가후 <u>총회에서</u> 경쟁. 수의(2회유찰) (100명 이하면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)
- ② 재개발을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한다.
- ③ 재개발. 재건축사업을 시. 군수등, 주공등,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- 시행자 지정. 고시후에 주민대표회의나 소유자 전체회의가 추천한 자를 선정한다.
- ④ 시공사와 계약체결시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

#### 1. 추진위원회

- ① 과반수 동의/ 5인 이상/ 시. 군수등 승인
- ② 공공지원을 할 경우 추진위 구성 안할수 있다.
- ③ 관리업자 선정(경쟁, 2회이상 유찰 수의 가능) 설계자 선정(변경), 시행계획서 작성, 운영규정 작성, 동의서접수, 정관초안 작성, 창립 총회
- ④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본다. 단,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⑤ 조합설립 동의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#### 2. 정비사업조합

- 1) **설립(변경)인가**: 시장. 군수등
- ① 재개발사업: 소(3/4) + 면(1/2)
- ② 재건축사업
  - 주택단지: [동: 과반수] + [전체: (3/4) + (3/4)]
  - ① 주택단지 외: 소(3/4) + 면(2/3)

정비사업조합

정

사

엄

조

함

#### 2) 동의자 수 산정

(검인한 서면동의- 성명 + 지장 + 신분증사본)

- ① 수인이 공유/ 토지소유자와 지상권/ 1인이 다수소유/ 2이상 공유한 수개 물건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모두 1인으로 본다.
- ② 동의한 자로 부터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봄
- ③ 동의 철회
  - 인. 허가 등의 신청전에 가능하다.
  - ① 다음 경우는 동의후 30일내만 가능
    - @ 정비구역 해제
    - ⓑ 조합설립(창립총회 후에는 철회 안 됨)
- ④ 철회 의사표시가 동의상대방 도달한 때, 시장. 군수등이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 발생한다.
- 3) 법 인격 등
- ① 법인(등기하면 성립한다.)
- ② 정비사업조합 문자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이 법외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4) 조합원

- ① 토지등 소유자(재건축- 동의한 자만)로 하되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조합원이다.
- ② 수인이 공유하거나, 수인이 1세대인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1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이 된 경우 조합원은 1인으로 본다.
- ③ 투과안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
- → 재건축(조합설립인가후)
- ① 재개발(관리처분계획인가후) 다만, 상속. 이혼은 제외
- © 허용(양도인)
  - @ 모두 타 행정구역 이전
  - **b** 모두 상속주택 이전
  - ⓒ 모두 해외 이주(2년이상 체류)
  - ① 1세대 1주택자가 10년이상 소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 주택
  - @ 경. 공매로 이전
- ② 권리취득 못한자 손실보상한다.

#### 5) 임원

- 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을 때 까지 정비구역에 거주(영업)하여야 한다.
  - ⊙ 선임일 직전 3년동안 거주기간이 1년이상
  - 정비구역 토지. 건축물을 5년이상 소유한 자
- ② 임원 수(감사 1~3 /이사 3인 이상, 소유자 수가 100명 초과 5인 이상으로 한다.)
- ③ 임기(3년이하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가능하다)

- ④ 조합장.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**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**.
- ⑤ 임원. 관리인의 결격사유(조합원 결격사유-x)
  - @ 도정법 위반 벌금 100만원이상 10년
  - (b) 퇴임전 관여한 행위 효력을 잃지 않는다.
- 6) 총회
- ① 총회의결시 조합원 10/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단, 창립총회, 사업계획서, 관리처분계획. 정비사업비 사용. 변경을 위한 총회는 20/100이상이 직접 출석 하여야 한다.(창.사.관,비)
- ② 총회 소집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7) 대의원회

- ① 조합원100인 이상(필수)- 개인점수
- ②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총회권한중......대행할 수 없다.(눈치)

#### 1. 사업시행계획서 동의

- ① 조합-총회 의결 ② 지정개발자: 소(과)+면(1/2)
- ③ 재개발사업을 소유자 시행: 소(3/4) + 면(1/2)
- ④ 시.군수등, 주공등-(x)/ 경미한변경은 동의 안받음
- 2. 사업시행인가(시장. 군수등).고시 -변경. 중지. 폐지도 인가 받는다. 단,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.(눈치)
- ①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......많다.(눈치와 가훈) (주거환경 제외- 소형주택의 건설계획) (재건축사업 제외- 임대주택 건설계획)
- ② 시장. 군수등은 60일내 인가여부 통보한다.
- ③ 200m이내 교육시설-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지정개발자 재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비의 20/100 예치하게 할 수 있다.(청산금지급 완료- 반환)
- ⑤ 일부 존치. 리모델링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
- ⑥ 의견청취: 14일 이상 공람
- ⑦ 의제사항....많다. 미리 관행장과 협의하고(30일)

#### 3.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

- 1)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등(이주대책)
- ① 주거환경. 재개발사업- 조치하여야 한다.
- ② 일시사용할 수 있다.(일시수용-x)
  - ① 이 경우 국. 공유지는 사용료 대부료 면제한다. .거절 가능하다(3자와 매매계약 체결/ 신청전에 사용계획 확정/ 3자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)
  - © 공사완료 30일내 원상회복 한다.

업 시 행 인 가 등

사

관

리

처

분

계

회

λГ

2) 수용. 사용-(사업시행인가 고시= 사업인정 고시)

- 3) 재건축 매도청구
- ① 사업시행인가. 고시후 30일내 동의여부 촉구
- ② 2월내 회답/ 기간내 회답안하면 거부로 본다.
- ③ 2월내 매도청구 (동의 안한자. 토지만 건축물만 소유한 자)
- 4)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
  - 환기는 2번만 하고 관용은 3번을 배풀라

#### 1. 분양 신청등

- ① 사업시행인가. 고시후 120일내 통지. 공고
- ② 기간: 통지한 날 30일~60일 이내(20일 연장)
- ③ 분양신청기간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
- ④ 투과안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내 분양신청할 수 없다.

단. 상속. 결혼.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자(0)

- ⑤ 손실보상 협의
  - 분양신청 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
  - ◎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
  - ◎ 투과안 5년간 신청 못하는 자
  - -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다음날부터 90일내 보상 협의- 협의(x)- 보상기간 만료 다음날 60일내 수용재결신청 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제기
- 2.관리처분계획의 내용: ........많다.
- .관리처분계획에는 ..... 포함되어 있다.(0. x)
- .종전 토지등 가격평가~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
- 3. 인가. 고시: 시장. 군수등(변경. 중지. 폐지도 인가) 단, 경미한 변경(....)은 신고한다.
  - ⓐ 조서의 단순정정(불이익을 받은 자가 없을 때)
  - (b)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☆. 지상권자는 분양권이 없다.
- ☆.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**3. 대지 등 가격 평가**(감평 2인 이상 산술평균)
- ① 주거, 재개발: 시, 군수등 선정, 계약한 감 2인이상
- ② 재건축: 시.군수등 선정계약 1인 이상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
- ③ 관리처분계획 변경, 중지. 폐지시 분양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건축물등 가격은 시행자 및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#### 4. 사업시행인가.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

시, 도는 주택부족, 주택시장 불안정 사유발생시 사업시행인가.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 조정을 시. 군. 구에 요청- 인가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.(특자시. 특자도도 동일하다.)

#### 5. 수립기준

- ① 원칙: 면적. 이용상황. 환경 기타상황 종합적 고려
- ② 좁은, 넓은 토지 및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.
- ③ 과소 토지.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토지 취득자는 현금청산할 수 있다.
- ④ 과소 토지는 증환지. 부지정. 입체환지 할 수 있다.
- ⑤ 분양설계: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수립한다. 분양설계라 함은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 위치를 정하고,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설계이다.

#### ⑥ 주택공급

- → 원칙: ⓐ 1인 1이상 주택등 소유: 1주택 공급 ⓑ 2인 이상- 1주택. 1토지 공유: 1주택 공급
- © 예외: @ 1토지 공유: 시. 도 조례 규정- 조례적용
  - ⓑ 소유한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. (과밀밖 재건축- 단, 투과와 조정지역은 제외/ 근로자 숙소등/ 국. 지자체. 주공등)
- ⓒ 종전 가격범위, 주택전용면적 범위내 2주택 공급 할 수 있다.- 60m<sup>2</sup>이하: 3년내 전매 제한
- ④ 과밀안 재건축(소유 주택 범위내 3주택까지) 단, 투과와 조정지역은 제외

#### 6. 권리산정 기준일(기준일)

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.

- 1) 원칙: 정비구역 지정. 고시일
- 2) 예외: 시. 도지사 투기억제 위해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구역지정 전에 따로 정한날
- 3) 대상행위- 지분쪼개기
- ① 1필지를 수개 분필 ② 단독을 다세대로 전환
- ③ 동일소유 토지와 주택을 토지와 주택 분리 소유
- ④ 나대지에 신축, 기존건물 철거하고 공동주택 건축

#### 7. 임대주택 인수의무

- ① 국, 시도, 시군구, 주공등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요청시 인수하여야 한다.
- ② 시도, 시군구가 우선 인수 어려우면 국장에게 주공등 인수자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획

- **3. 인가. 고시 효과**(시장. 군수등 인가)
- 1)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기준
- ① 관리처분계획대로 처분. 관리 하여야 한다.
- ② 잔여분은 보류지.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가능
- 2) 기존 건축물 철거
- ① 원칙: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후
- ② 예외: 붕괴우려 등- 소유자 동의. 시장. 군수등 허가받아 미리 철거할 수 있다.
- ③ 안전사고 우려시 철거시기 제한할 수 있다.
- 3) 종전 토지등은 이전고시일까지 사용. 수익 정지 -단, 시행자 동의/ 보상 미완료시는 사용가능함
- 4) 용익권자 권리보호
- ① 계약해지→ 금전반환청구(시행자)→ 구상권 → 미리 압류(저당권과 동일 효력)
-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경우 민법. 주임법. 상임법 등 최단기간 적용 안한다.
- 1. 준공인가, 고시(시장, 군수등)
- ① 주공은 자체검사 통보(시.군수등 분양대상자에게 통지) - 지공은 시장. 군수등에게 별도 검사 받아야 한다.
- ② 시. 군수등은 관계기관에 검사실시 의뢰 가능하다.
- ③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 가능하다.(동별. 세대별가능)
- ④ 정비구역은 준공인가. 고시(관리- 이전고시) 있는 날 의 다음날 해제된다.(조합 존속에 영향 안준다)
- ⑤ 타 법에 의한 준공검사등 의제된다.(미리 협의)
- 2. 이전 절차
- ① 절차: 공사완료 고시→ 확정 측량→ 토지분할→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하고 소유권 이전→ 공보에 고시→ 시장. 군수등 보고
- ② 소유권 취득: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
- 3. 이전고시 효과
- ① 지상권 등 권리이전- 이전받은 대지등에 설정
- ② 도시개발법 준용: ③ 분양받은 대지등 = 환지 ○ 보류지. 일반분양 = 체비지. 보류지
- ③ 이전등기: 이전고시후 지체없이(촉탁. 신청)
- ④ 이전고시일~ 이전등기일까지 다른 등기 할 수 없다.
- 4. 청산금
- ① 이전고시후 징수 지급. 단, 정관에서 정하거나 총회에서 의결거쳐 정하면(관리~이전고시일) 분할징수 지급가능
- ② 강제징수. 징수위탁 가능 ③ 공탁 가능
- ④ 저당권자 물상대위- 청산금 지급전에 압류
- ⑤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안하면 소멸한다.

# 거 축 법

- 1. 적용 대상물
- 1) 대지: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
- ① 둘 이상 필지를 하나 대지로 할 수 있다.
- ②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로 할 수 있다.
- 2) 건축물 등
- ① 토지 정착- 지붕과 기둥 또는 벽(딸린 시설: 대문.담장)
- ②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. 공연장. 창고. 차고. 점포
- ③ 건축법 적용배제 건축물(문. 철. 고. 컨. 수문조작실) (고층: 30층이상. 120m 이상/ 초고층: 50층이상. 200m이상)
- 3) 공작물

용

Ю

정

의

건

축

법

적

용

범

옹.담-2/ 장식. 기념. 광고-4/ 태양-5/ 굴뚝. 철탑-6/ 고가-8/ 주차장-8m이하/ 대피-30넘는/조례가 정한 것

- 4) 주요구조부: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, 주계단 단, 사이기둥. 최하층바닥. 작은 보. 차양. 옥외계단은 제외
- 5) 지하층: ① 평균높이. 층고의 1/2이상 ② 층수 제외 ③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- 포(탕), 용- 제
- 2. 적용 대상 행위
- 1) 건축: 신축. 증축. 개축. 재축. 이전
- 2) 대수선
- ① 증설. 해체는 수치 관계없이 대수선이다. 단, 증설하여 면적. 높이. 층수를 증가시키면 증축이다.
- ② **수선. 변경-** 내력벽 30㎡/ 기둥 3/ 보 3/ 지붕틀 3/ 외벽 30㎡이상 대수선이다.

.방화, 주계단, 경계벽은 수치와 관계없이 대수선이다.

- 3) 용도변경
- ① 건축물의 용도- 29가지
- ③ 허가(상위). 신고(하위)- 특자시. 특자도. 시. 군. 구
- ④ 동일 시설군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(단. 동일호 상호간, 근생시설 상호간 변경은 제외)
- ⑤ 허가. 신고 100㎡이상: 사용승인 규정 적용한다. 단, 500m<sup>2</sup>미만으로서 대수선 수반하지 않으면-x
- ⑥ 허가 500㎡이상인 경우 건축사 설계규정 적용한다.
- ⑦ 동일시설군안에서 복수용도 허용한다.
- 3. 적용 대상 지역
- 1) 전 규정 적용: 도시/ 지구/ 동. 읍(섬- 인구 500이상)
- 2) 일부 규정배제(기타 지역- 보전목적인 지역)
- ① 대지와 도로 관계 ② 도로의 지정. 변경. 폐지
- ③ 건축선 지정
- ④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
- ⑤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⑥ 대지분할제한

건

축

신

 $\Box$ 

대

상

가

건

물

거

차

등

사 전 결 정

① <u>허가대상 건축물</u> <u>허가권자에게</u> 사전결정 <u>신청할</u> 수 있다.

- ② 건축위원회 심의. 교통영향분석 동시신청할 수 있다.
-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은 환경부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결정의제: 개. **산**. 농. 하 (협의- 15일. 경과 간주) (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의제된다)
- ⑤ 결정 통지 **2년내 허가신청**(위반- 실효)
- **1. 허가권자 등**(건축. 대수선)
- ① 원칙: 특자시. 특자도. 시. 군. 구청장
- ② 예외: 특. 광시장(21층 1. 10만㎡ 1/9 3/10이상 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. 10만m'이상 단, 공장. 창고. 심의(초고층 제외)- 제외한다.
- ③ 도지사 승인
- 특. 광시장 허가대상 건축물
- ① **자**연. **수**질(3층 1. 1천m² 1 위. 숙. 음. 업. 공)
- © 주거. 교육(위락. 숙박시설)
- ④ 허가 거부(심의 거쳐)
- 위락. 숙박→ 주변환경 부적합
- 방재지구 등→ 침수우려지역에 지하층 등 일부공간을 주거. 거실로 설치가 부적합 인정
- ⑤ 공용 건축물: 협의(허가. 신고의제/ 사용승인- x)
- ⑥ 허가. 신고 의제사항: ....많다.(소방- x/ 15일)
- ⑦ 허가취소 하여야 한다.
  - 2년(공장 3년)내 미착수(1년 연장 가능하다)
  - ① 기간내 착수했으나 공사완료 불가능 인정시
  - ◎ 착공전 경.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6월 경과후 공사착수 불가능 판단
- ⑧ 심의후 2년내 허가신청 안하면 심의 효력 상실
- 2. 건축허가. 착공 제한
- ① 국장(허가권자): 국토관리. 주무장관이 요청시 (국방. 문화재보호. 환경보호. 국민경제상)
- ② 특시. 광시. 도(시.군.구): 도시. 지역계획상 필요 → 국장 보고→ 지나치면 해제 명할 수 있다.
- ③ 주민 의견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다.
- ④ 기간: 2년이내(연장 1회 1년이내)
- ⑤ 제한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→ 허가권자 공고
- 3. 허가신청시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다.

단, 미확보: ① 사용권원 확보(분양목적 공동은 제외)

- ② 건축주가 신축. 개축. 재축. 리모: 공유 수 80%이상 동의 받고 동의한 공유자지분이 전체지분 80%이상 -동의 안한 자 매도청구(3월이상 협의. 시가)
- ③ 대지에 포함된 국,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토지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
- ④ 집합건물 공용부분변경 위해 결의 있음을 증명한 경우

-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.

- ① 바닥면적 합계 85㎡이내 증. 개. 재축 (3층 이상은 연면적 1/10이내)
- ② 관. 농. 자 에서: 3층 미만이고 연 200㎡ 미만 (지구단위계획구역/ 방재지구/ 붕괴위험지역- x)
- ③ 연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
- ④ 연 200㎡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(내력벽 30m<sup>2</sup>이상. 기둥 3개이상. 보 3개이상. 지붕틀 3개이상. 방화. 계단- 수선만)
- ⑤ 연면적 100m<sup>2</sup>이하
- ⑥ 높이 3m이하 증축
- ⑦ 공. 산. 지구: 2층이하 이고 500㎡이하 공장
- ⑧ 농. 수산업~ 창고(200㎡↓). 축사(400㎡↓)
- -1년내 착수안하면 신고효력 상실한다. (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)

1. 허가대상: 도시.군계획시설부지 안 ① 3층이하

- ② 기간: 3년이내(연장 가능하다)
- ③ 철 콘이 아닐것
- ④ 전기. 가스등 간선시설 설치요하지 않을것
- ⑤ 공동주택. 판매등 분양목적 아닐것
- 2. 신고대상: 존치기간 3년이내
- 3. 연장신고
- ① 허가(14일전) ② 신고(7일전까지)

#### 1. 안전관리예치금

- ① 연면적 1천㎡이상 건축물
- ② 착공신고할 때 공사비 1%를 예치한다.
- 2. 사용승인
- ① 대상: 허가. 신고. 가설건축물 허가(협의-x)
- ② 시기: 공사 완료(동별 완료 포함)후
- ③ 교부: 7일내 검사→ 합격하면 교부
- ④ 사용시기- 사용승인 받고 [단, 기간내 사용승인x. 임시사용승인 받으면]
- ⑤ 타 법의 준공검사등 의제
- ⑥ 임시사용승인: 2년이내 (연장은 가능하지만 기간과 횟수는 없다.)

대

- ① 인접 도로면 보다 낮으면 안된다.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.
- ② 습한 토지. 쓰레기등 매립토지는 성토. 지반개량
- ③ 대지에는 오수, 우수 배출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
- ④ 손궤우려 있는 부분에 대지를 조성시 옹벽설치 (높이 2m이상 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한다.)

건 허 가

> 지 안 전

구

조

밓

설

Ш

면

적

등

하

1. 조경: 200m<sup>2</sup>이상 대지에 건축시 조경한다.

- 단, ① 연 천5백㎡미만 물류시설(상업. 공업은 심는다)
  - ② 연 천5백㎡미만 공장
  - ③ 대지면적 5천㎡미만인 공장은 제외한다.
- 2. 공개공지(소규모 휴게시설)- 전주. 전공. 일공은 제외
- ① 일주. 준주. 상업. 준공.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
- ② 바닥 5천㎡↑ **판**매(농산물유통- x). **문**집. **종**교. 운수(여객용만). 업무. 숙박 등 다중이용시설

-판문점은 엄숙하5-(판. 문. 종. 운. 업. 숙. 하. 5천)

- ③ 대지면적 10%이하 조례
- ④ 건. 용. 높이를 대령에서 완화(용. 높이- 1.2배)

#### ◉ 참고: 다중이용건축물

- 1. 판. 문. 종. 운/ 종. 숙. 하. 오 판매. 문집(동.식물원 제외). 종교시설. 운수(여객용만). 의료중 종합병원. 숙박중 관광숙박. 바닥 5천m'이상
- 2. 16층이상 건축물

3. 도로

1) 정의: 보행+차량+4m+법령 고시 or 위치 지정 공고

예정도로 포함

- ① 차량통행 불가능 인정: 3m 이상
- ② 막다른 도로
  - ① 10m 미만: 2m. ② 10m~35m 미만: 3m
  - © 35m 이상: 6m이상
- 2) 지정. 폐지. 변경-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한다. 단. 지정은 예외 있음- 심의거쳐 지정할 수 있다.
- ① 이해관계인 해외 거주 동의받기 곤란
- ②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- 조례
- 3) 접도길이
- ①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(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) 단, 🗇 출입 지장 없는 경우
  - ② 공원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⑤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.
- ② 연 2천㎡(공장은 3천㎡)이상: 폭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(이육사. 공장은 3육사)
- 4. 건축선(대지와 도로 경계선)
- 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
- 중심선 소요너비의 1/2만큼 물러난 선
- ① 반대쪽 하천 등: 반대쪽에서 소요너비 상당하는 선
- ② 지정 건축선: 도시에서 4m 이내 후퇴지정가능하다.
- ③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안 됨(지표아래 제외)
- ④ 도로면 4.5m 이하 창문 개폐시도 초과 금지

1. 내진능력공개(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)

2층(목구조 3층). 200㎡(목구조 500㎡). 높이13m. 처마9m. 기둥10m. 3m돌출. 단독. 공동주택

- **2. 방화지구**: 건축물(내화구조). **공**작물(불**연**재료)
- 3. 헬리포트
- ① 11층. 1만㎡이상 건축물의 평지붕
- ② 경사지붕 아래에는 대피공간 설치한다.
- 4. 피난안전구역:
- ① 초고층 30개 층 마다 1개소이상
- ② 준초고증: 1/2되는 지정에서 상하 5개층 이내
- 5. 난간설치- 옥상광장. 2층이상 노대 높이 1.2m이상
- 6. 승강기
- ① 6층이상 으로서 연 2천㎡이상
- ② 비상용승강기 31m초과(분산배치)
- ③ 고층 건물 승용승강기 중 1대이상 피난용으로 설치

1. 대지가 2 이상 지역 등에 걸친 경우

- ① 건축물과 대지 전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 한다.
- ②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 적용한다.

단, 방화벽으로 구획하면 그러하지 않는다.

- ③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 걸치면 건축물과 대지는 각 각 지역을 적용한다.
  - 단, 녹지안 건축물이 방화 걸친: 방화 적용한다

2. 면적산정 방법

- 1) 대지면적: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
- 2) 건축면적: 건축물의 외벽(외곽 기둥)의 중심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
- 3) 바닥면적: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,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
- 4) 연면적: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.
- 5) 건축물의 높이: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고,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.

대 지 와

도 로

3. 건폐율과 용적률

- 1) 건폐율: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. (2동이상인 경우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)
- 2) 용적률: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. (2동이상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)
- 3)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계법을 기준을 적용하나 이 법에서 강화. 완화할 수 있다.
- 4. 대지분할제한 ~ 분할할 수 없다.
- ① 주. 기(60m²)/ 상. 공(150m²)/ 녹(200m²)미만
- ② 사유; 도로와 대지의 관계/ 건폐율/ 용적률/ 대지안의 공지/ 높이제한/ 일조 등 높이제한/
- 5. 층수 산정

면

적

듲

제

하

- ① 지하층은 층수 산정시 제외한다.
- ②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m마다 1층으로 본다.
- ③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
- ④ 승강기탑등 옥상부분 면적이 건축면적의 1/8이하 인 경우 층수에서 제외한다.
- ★.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된다. 단, 각층 바닥면적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
- 1. **높이제한**(가로구역)
- ① 허가권자 가로구역단위 높이 지정. 공고할 수 있다.
- ② 주민 의견청취하고 심의한다.
- ③ 용도.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④ 특. 광시장이 특.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2. 일조 등 확보 높이제한
- 1) **전주. 일주**(모든 건축물)
- ① 정북방향 인지경계선으로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.
  - → 9m이하- 1.5m이상
  - ① 9m초과- 높이 1/2이상
- ② 개발예정지역/ 북쪽에 도로등 공지가 있는 경우. 북쪽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경계선으로 부터 대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.
- 2) 공동주택(중상. 일상은 적용하지 않는다.) 대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입지경계선까지의 2배 이하(근상. 준주는 4배 이하)/ 기숙사는 제외 .다세대는 1m이상이면 2.4배 적용 안한다.
- ② 인동거리(하나 대지에 2동이상 건축시)
- 3) 소형: 2층이하로서 8m이하인 건축물은 조례로 일조등 확보 높이제한을 적용 않을 수 있다.

- 1. **지정** 국장. 시.도지사
- ① 대상지역: 혁신도시등 개발예정지역
- ② 개발제한구역. 접도구역. 자연공원. 보전산지 는 지정할 수 없다.
- 2. 지정 절차
- ① 중행장, 시.도는 국장에게 요청하고 시.군.구 장은 시. 도지사에게 지정요청할 수 있다.
- ② 지정신청 받고 30일내에 건축위회 심의한다.
- ③ 지정후 5년내 착공 안하면 해제할 수 있다.
- ④ 지정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. 단, 용도지역. 지구. 구역은 제외한다.
- 3. 적용특례
- (1) 건폐율(용적률). 조경. **대**지안의 공지. **높이** 제한을 적용 안함(건조대높이)
- ② .....다른방법 대신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거친 경우 완화할 수 있다.
- ③ 미술작품 설치, 부설주차장, 공원설치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.(미<mark>장원</mark>)
- 1. 협정체결지역- 소유자등 전원합의로 체결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주거환경개성사업구역
- ③ 존치지역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
- ⑤ 조례가 정하는 지역 (지.주.존.재)
- 2. 협정인가 및 폐지- 인가하고 공고한다.
- ① 협정체결자, 협정운용회 대표자는 협정인가 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2이상 시. 군. 구에 걸친 경우 토지면적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.
- ③ 폐지할 때 과반수 동의 받아 인가받는다. (맞벽 착공신고 20년후 폐지신청 가능하다)
- 3. 연접한 대지 통합적용- 건조한 지하도주
- 건폐율 ② **조**경 ③ **지**하층 설치
- ④ 개인하수시설 설치 ⑤ 대지와 도로관계
- ⑥ 부설**주**차장 설치

#### 1. 부과금액

- ① 건폐율. 용적률 초과/무허가, 무신고 건축 ⊙ (50/100 x 위반면적) x 대령 비율
- © 무허가(100). 용(90). 건(80). 무신고(70)
- ② 기타- 10/100 범위에서 대령정하는 비율
- 2. **감액-** 60㎡이하 주거용은 1/2이내 조례
- **3. 가중-** 영리목적. 상습위반 100/100 가중
- **4. 부과절차-** ① 사전계고 ② 요식행위
- ③ 1년에 2회이내 ④ 부과중지 ⑤ 강제징수

# 별 건 축 구

건

축

혐

정

특

제

01

한

01 행 강 제 금

사

업

주

체

# 주 택 법

- 1. 주택: 부속 토지포함/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
- 1) 종류: ① 단독(단, 다중, 다가구)과 공동(아. 연. 다세대)
  - 다중: 3개층이하 + 660㎡이하
  - © 다가구: 3개층이하 + 660m<sup>2</sup>이하 + 19세대이하
  - ◎ 아파트: 5개층이상
  - @ 연립: 4개층이하 + 660m<sup>2</sup>초과
  - □ 다세대: 4개층이하 + 660㎡이하

★.주의: 공관과 기극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니다.

- ② 국민: <u>다음 + 85㎡(수-x 도시아닌 읍. 면 100㎡)이하</u>
  - ⊙ 국. 지자체. 공사(토. 지)가 건설
  - 국.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
- 2) 도시형생활주택: 300세대미만/ 국민주택규모/ 도시지역
- ① 단지형 연립. 다세대- 심의(5개층까지 가능)
- ② <u>원룸형(50㎡</u>↓). 욕실. 보일러실 제외하고 1개 공간 30㎡이상은 2개 공간할 수 있다. (지하에 설치 -x)
- ③ 공동건축(x): 도생+비도생/ 연립+원룸/ 다세대+원룸 단, 원룸+비도1세대/ 준주. 상업(원룸+비도생)- 가능
- 3) 세대구분형: ① 구분공간 일부만 구분소유 안됨
- ② **사승대상**: 전체 세대수 1/3이내. 전용면적의 1/3이내
- ③ 허.신대상: 2세대 ↓, 전체 세대 1/10과 그 동 세대 1/3↓
- ④ 주택건설기준 적용시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.
- 2. 준주택: 오피스텔. 노인복지주택. 기숙사. 다중생활시설
- 3. 공공택지: 공동주택 건설용지/ 수용/ 공공시행자 (단독주택-x/ 환지방식-x/ 민간시행자- x)
- **4. 주택단지:** 사업계획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(8도 20일) 8m이상 도시.군계획예정도로/ 20m이상 **일**반도로
- 5. 부대시설: 주차장. 관리사무소. 담장. 도로. 보안등. 경비실
- 6. 복리시설: 놀이터. 근생시설. 유치원. 주민운동시설. 경로당
- 7. 기간시설: 도로. 상하수도. 전기. 가스. 통신. 지역난방
- 8. **간선시실:** 단지안 기간시설과 단지밖 기간시설 연결 도로. 상하수도. 전기. <u>가스. 통신. 지역난방</u> 단지안 포함
- 9. 리모델링: ① 대수선 + 일부증축
- ② 증축: 15년 경과 + 30%이내 (85m<sup>2</sup>미만 40%이내)
- ③ 기존 세대수 15% 이내로 증축 가능 (수직증축- 15층이상은 (3개층)/ 14층이하(2개층)
- 10. 공구

용

Ю

의

정

의

- ① 착공신고. 사용검사 별도 수행
- ② 공구간 6m ↑ 구분 ③ <u>공구별 300세대 이상</u>
- ④ 단지<u>전체 600세대 이상</u>

- 1. 등록사업자(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)
- ① 연간 단독 20호. 공동 20세대(도생. 퇴직자 용- 30)
- ② 연간 1만㎡이상 대지조성
  - 단, 🗇 국. 지자체, 공사(토주. 지공). 공익법인
  - ① 주택조합.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2. 공동사업주체- 공동사업주체로 본다.
- ① 토지소유자. 주택조합. 고용자 + 등록사업자
- ② 고용자는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. 필수(고삐리)
- 1. 종류: 지역. 직장(건설. 공급받는). 리모델링
- 2. 설립(인가후 2년내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야 한다)
- ① 시. 군. 구: 인가받고/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은 신고한다. 변경과 해산도 동일하다.
- ② 첨부서류(회.장.규.명.서-3확)
- 창총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규약
- ② 조합원 명부
   ◎ 사업계획서
   ⑤ 조합원 자격

   확인서류
   ③ 토지권원(사+소) 확인서류
- 근무 확인서(직장)

(대지 80%이상 사용권원 확보하고 15%이상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.)

- ③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조합 (명부. 근무. 무주택)
- ④ 리모델링 주택조합 (회장규명서 + 년수. 결의서)
- 경과 년수: 10년/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
- © 조합설립 결의: @ 동 조합: 그 동 2/3이상
  - ⓑ 전체조합: 전체 2/3이상과 동별 과반수
- 3. 조합원
- 1) 수: 조합설립인가 받은날 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건설예정 세대수(임대주택 제외)의 50%↑. 20인 이상 단,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않는다.
- 2) 자격(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는 예외로 함)
- ① 지역: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(투과는 1년전부터)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. **85㎡이하 1채(세대주)** 
  - + 6월이상 거주 +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
- ② 직장: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(투과는 1년전부터)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. 85㎡이하 1채(세대주)
  - + 동일 직장근무 +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
- ③ 직장(국민주택 공급): 상동 + 무주택(세대주)
- ④ 리모: 공동주택 소유자/ 복리시설 소유자 (공유- 1인 조합원/ 동의한 한 자의 주택을 취득시 동의승계 됨)
- 3) 결혼등 자격을 일시상실한 경우 시. 군. 구가 인정시 자격 유지된다.

주

택

조

합

사

엄

계

회

승

인

사

업

시

조

치

- 4) 지역. 직장: 설립인가후 교체. 신규가입 안된다.
- 단, ① 추가모집 승인: 건설예정세대수 초과 금지
- ② 충원: ③ 조합원사망 ① 사업계획승인이후 양도. 판결 등 으로 변경 ② 조합원 탈퇴로 50%미만
  - ② 무자격 판정 ◎ 건설예정세대수 변경으로 50%미만
- -자격요건 판단시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
- 5) 조합원 모집
- ① 50%↑ 사용권원 확보- 시군구에 신고. 공개모집(변경)
- ② 공개모집이후 충원. 재모집은 신고없이 선착순가능하다.
- 6) 철회(가입 30일이내. 7일내 가입비 반환요청. 10일내 반환)
- 4. 임원. 발기인
- ① 결격사유 발생시 당연 퇴직된다.
- ②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상실 안한다.
- 5. 기타

주

택

조

함

- ① 등록사업자+주택조합 공동시공시 등록사업자는 시공자책임과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
- ② 조합(<u>리모델링 제외</u>)은 건설주택을 조합원에게 <mark>우선공급.</mark> 국민주택 직장에 **우선공급할 수 있다**.
- ③ 자료공개 요청시 15일이내 제공해야 한다.
- ④ **총회의결시 조합원 10/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** 단......은 20/10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.(눈치)
- ⑤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.
- 거짓.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
- ©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⑥ 조합원 모집신고후 2년내 설립인가x-사업종결여부결정
- ⑦ 설립인가- 3년내 사업계획승인x- 총회 해산여부 결정
- 1. 승인대상
- ① 단독: 30호(공공사업. 한옥: 50호)
- ② <mark>공동: 30세대</mark>(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) 단. 50이상: ⑤ 단지형 연립.다세대(30㎡↑. 폭6m↑) ⑥ 정비사업중 주거환경사업으로 하는 공동주택
- ③ 대지: 1만m'이상
- 2. 승인권자- 신청후 60일 내 승인한다.
- ① 대지 10만m'이상: 시. 도. 대시장
- ② 대지 10만m'미만: 특. 광. 특. 특. 시. 군수
- ③ 국장: 🗇 국가. 토주공
- © 330만㎡이상 택지. 도시개발- 국장이 지정. 고시
- ◎ 수. 광역시 주택난 해소. 지역균형개발- 국장 지정
- ② 국. 지. 공사가 50%↑ 출자회사가 공공사업시행
- 3. 승인 신청시 건설대지 소유권 확보함이 원칙
- 단. ① 지구단위계획결정 필요 + 80%이상 + 매도청구-주택조합은 95%이상 소유권 확보
- ② 소유권 미확보 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확보
- ③ 국가. 지자체. 토주공. 지공이 시행

#### 4. 매도청구

- ①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(3월이상 협의)
-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0년전 소유자에게는 못함
- ③ 95%이상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.
- ④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 안한 자- 매도청구 가능
- 5. 승인. 고시 효과(의제사항):.....많다.(눈치) (변경은 변경승인 받는다.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.)
- 6. 착수시기 및 승인취소
- ① 승인후 5년내 착수(연장 중단사유 종료하고 1년)
- ② 분할시행
  - 최초공구 승인 후 5년내 착수(연장 종료1년)
  - 최초 공구외는 최초 공구 착공신고후 2년내
- ③ 사업계획승인 받은 후 매도청구 대상 토지는 합의 또는 승소판결 받은 경우 착수할 수 있다.
- ④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수 있다.
- 5년. 5년내 착수안하면(단, 분할시행 2년은 제외)
- 경.공매 대지소유권 상실(분양보증 받은 경우는 제외)
- ◎ 파산으로 완료 불가(분양보증 받은 경우는 제외)

#### 1. 수용. 사용:

- ① 국. 지자체. 공사만(등록사업자- x)
- ② 국민주택건설이나 국민주택건설 위한 대지조성시
- ③ 사업계획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본다.
- ④ 이법 규정외에는 공취법 준용한다.
- 2. 국. 공유지 우선매각등
- ① 85m<sup>2</sup> ↓ 규모를 50%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 건설자
- ② 2년내 주택건설. 대지조성 안하면 환매. 계약취소
- 3. 체비지 활용
- ① 국민주택 사업주체에게 1/2범위내 우선공급할수 있다
- ② 감정가격 공급한다.(임대주택등은 조성원가 공급)

#### 1. 발행자

- ①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
- ② 등록사업자는 <u>일정기준 갖추고</u> 지급보증 받아야 한다.(5억/ 3년/ 300세대)
- 2. 발행승인: 국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.
- 3. 발행방법: 기명 증권/ 액면 또는 할인발행/
- 4. 상환: 3년초과 금지(발행일부터 계약시)
- 5. 양도
- ① 양도나 중도해약 안된다(해외이주등 가능)
- ② 양수인은 원부에 주소.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에 성명을 기재하야 한다.
- 6. 효력: 등록말소 되어도 효력에 영향 없다.
- 7. 적용법률: 이 법외 상법중 사채발행 적용

택 상 환 사 채

주

택

- 2. 견본주택: ①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시 마감자재 목룍표와 영상물을 시.군.구에 제출한다.
- ② 사용검사후 2년이상 보관하고 입주자 요구시 열람
- ③ 주택공급광고 사본 제출- 사용검사후 2년이상 보관
- 3.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
- 1) 대상: 공공택지와 민택중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(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공급하는 공동주택)
- 2) 제외: ①도생 ② 관광특구 50층이상 또는 150m
- ③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촉진 관련
- ④ 공사가 시행자 참여- 정비사업. 소규모 주택정비사업
- 3) 분양가= 택지비 + 건축비(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)
- ① 공공택지= 공급가 + 부대비용(국토부령)
- ② 민간택지= 감정가 + 부대비용(국토부령)
- ③ 건축비= 국장이 정한 <u>기본형건축비</u> + 부대비용 (기본형건축비를 시.군.구가 별도 지정,고시 가능)
- 4) 분양가 공시- 하여야 한다.
- ① 공택: 사업주체 ② 민택: 시. 군. 구
- 5) 거주의무- 5년이내/ 이주시 매입신청/ 부기등기
- 6) 분양가심사위원회
- ① 시. 군. 구는 사업계획승인신청후 20일 내에 설치. 운용한다.
- ② 국. 지자체. 공사는 해당 기관장이 설치한다.
- ③ 입주자모집 승인시 심사결과를 준수한다.
- 4.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 지정(국장)
- ① 시.도(의청)→ 심의→ 지정.공고→ 시.군.구에 통보
- ② 지역: ① 12월간 아파트 분양가상승률 물가2배 초과
- ①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20% 이상 증가
- © 2개월간 경쟁률이 5:1(국민이하 10:1)초과
- ③ 시. 도, 시. 군. 구가 해제 요청하면 40일내 심의 거쳐 결과 통보하여야 한다.
- 5. 사용검사후 매도청구
- ① 사용검사이후 소유권 취득자에게 시가 매도청구
- ② 대표자 선정(3/4이상 동의)하여 소송제기 가능
- ③ 전체면적의 5/100 미만시 매도청구 가능하다
- ④ 소유권 확보후 2년내 송달되어야 한다.
- ⑤ 소송 판결은 주택소유자 전체에게 효력이 있다.
- ⑥ 사업주체에게 소요비용 구상할 수 있다.
- 6. 주택 공급질서 유지
- 1) 제한: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. 지위의 양도. 양수. 알선. 광고(상속. 저당은 가능하다)
- ① 주택조합원 지위 ② 주택상환사채 ③ 입주자 저축증서
- ④ 시장등이 발행한 철거예정증명서. 철거확인서
- 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확인서 등

2) 위반시 조치

- ① 지위무효 ② 계약취소 ③ 사업주체 환매
- ④ 퇴거명령 ⑤ 10년이내 입주자격 제한
- ③ 처벌(3년, 3천)- 이익의 3배가 3천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금액이하 벌금

#### 7. 저당권설정등 제한

- ① 입주자 모공고승인신청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등 제한한다.
- ② 부기등기 시기
-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시과 동시
- 주택은 소유권 보전등기와 동시
- ③ 부기등기 이후 저당권등 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④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탁요구하면 신탁할 수 있다.
- 8.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
- 1) 투기과열지구 지정(국장과 시. 도지사)
- ① 국장은 시. 도 의견청취/시. 도는 국장과 협의
- ②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
- ③ 지자체장이 해제요청: 40일내 결과 통보
- ④ 2개월간 5:1(10:1 초과)/ 분양계획 30%↑ 감소
- 2) **조정지역**: 국장 지정/ 해제요청(시.도, 시.군.구)
- 3) 전매제한(상속은 제외한다)
  - -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 이내
- ① 대상: ③ 투과안의 주택(지위0) 조정지역의 주택 ◎ 분양가상한제 주택 ② 공택외의 주택
- ② 특례및 우선 매입: 사업주체 동의받아 전매가능
  - -주택은 토주공(지공이 건설시 지공)동의: 우선매입
  - -<u>전원</u> 타 도시 이전(수도권-x)/상속/ 해외(2년)/ 이혼 이주대책용(시.군.구 확인)/ 경매. 공매/ 일부증여
- ③ 위반: 사업주체 환매(입주금 + 이자 = 매입비용)
- ④ 주택은 부기등기 한다.
- ⑤ 처벌(3년. 3천)- 이익의 3배가 3천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금액 벌금

#### 1. 리모델링

- ① 리모델링은 시. 군. 구 허가 받아야 한다.
- ② 리모델링조합의 결의: ⊙ 동별(75%↑) ○ 전체- 전체(75%↑) + 동(50%↑)
- ② 입주자대표회의: 소유자 전원 동의

#### │ 2. 리모델링 기본계획

- ① 특. 광시. 대시장: 10년단위 수립. 5년재검토
- ② 시장: 도지사가 수립필요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14일 주민 공람/ 지방의회(30일)
- ④ 관행장과 협의후 지도위 심의거쳐 확정한다.
- ⑤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.

주

탪

공

모 델

=24=-

#### 농 지 법

#### 1. 용어 정의

#### 1) 농지

- ① 전. 답. 과수원 기타 실제현상이 농작물 경작지. 다년 생 식물 재배지
- ② 위 ①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(수로. 농로. 제방등)
- ③ 위 ①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부지 -고정식온실. 버섯재배사. 축사. 농막등
- ④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
- 초지법의 초지
- © 전, 답.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서 계속해서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에 3년 미만인 토지
- ◎ 임야를 허가받지 않고 경작. 재배에 이용한 토지

#### 2) 농업인

- ① 1,000m(비닐하우스 330m)이상 경작. 재배
- ② 1년중 90일 이상 농업(축산업 120일)에 종사
- ③ 대- 2, 중- 10, 소- 100, 가금, 1천, 꿀벌- 10군
- ④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

#### 3) 자경

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경장. 재배에 상시종사 하거나 1/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. 재배

#### 2. 농지 소유

#### 1. 소유제한

- 1) 원칙: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
- 2) 예외: ① 국가. 지자체 ② 학교. 공공단체
- ③ 주말영농 ④ 상속 ⑤ 8년이상 경작하다 이농
- ⑥ 담보농지 ⑦ 전용허가. 신고 ⑧ 전용협의 완료
- ⑨ 1,500m<sup>2</sup>미만 ⑩ 경사 15%이상 ⑪ 농어촌공사
- ② 농어촌정비법 ③ 공유수면매립 ④ 토지수용
- ⑤ 공취법 ⑥ 비축농지
- 3) 기타
- ① 임대.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중 소유 가능
- ② 농지법 이외 농지소유 특례 제정 금지

#### 2. 소유상한-(농업경영 않은 경우)

- 2) **8년 경작 이농: 1만㎡——** 소유상한 적용안함
- 3) 주말농장: 1,000㎡미만(세대원 전부합산)

#### 3. 농취증(시. 구. 읍. 면장이 발급/ 군수- x)

- 1) 경영계획서 작성 면제(10년 보관)
- ① 학교. 공공단체 ② 주말농장 ③ 허가. 신고
- ④ 1,500m<sup>2</sup>미만 ⑤ 경사 15%이상 ⑥ 비축농지
- 2) 농취증 면제
- ① 국가. 지자체 ② 상속
- ③ 담보농지
- ④ 전용협의 완료 ⑤ 농어촌공사 ⑥ 농어촌정비법
- ⑦ 공유수면매립 ⑧ 토지수용 ⑨ 공취법
- ⑩ 법인끼리 합병 ⑪ 공유농지 분할 ⑫ 시효취득
- ⑬ 법률규정 환매 ⑭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...
- 3) 기간: 4일(경영계획서 작성 면제시 2일)
- 4. 농지처분-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한다.
- 1) 처분사유: ① 대령 정당사유 없이 경영 이용안함
- ②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않고 3개월 경과
- ③ 전용 허가. 신고후 2년내 미착수
- ④ 대령 정당사유 없이 주말 체험영농 이용 안함
- ⑤ 소유상한 초과(초과만 처분한다)
- ⑥ <u>대령 정당사유</u> 없이 경영계획서 내용 이행안함 (<u>대령:</u> 자연재해. 농지개량. 질병. 취학. 징집. 3월이상 치료. 교도소. 3월이상 국외여행. 농업법인 청산. 공직취임. 휴경등)
- 2) 처분 통지(시. 군. 구): 처분의무기간은 1년
- 3) 처분명령유예(3년)- 공사에 매도위탁. 성실경영
- 4) 처분명령(시.군.구): 6개월내 처분해야 한다.
- 5) 매수청구(농어촌공사에게): 공시지가 기준(시가비교)
- 6) 이행강제금(시. 군. 구)
- ① 금액: 20/100 ② 연 1회

#### 3. 농지 이용

- **1. 대리경작**(지정: 시. 군. 구)
- ① 대상: 유휴농지(휴경지와 무늬만 농지는 제외)
- ② 지정기간: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.
- ③ 사용료: 수확량의 10%. 수확 후 2월내 지급

#### 2 임대차 등

- 1) 대상 농지
- ① 소유제한의 ①. ④내지 ⑯에 해당하는 농지
- ② 소유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. 사용대, 주말체험영농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. 사용대등
- 2) 계약방법
- ① 서면계약 원칙
- ② 계약은 등기 없어도 임차인이 시. 군. 읍. 면장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효력 있다.

- 3) 임대차 기간
- ① 3년(다년생식물 5년)이상, (자경농지 이모작 8개월 이내)
- ② 기간 정함(x), 3년(5년)미만은 3년(5년)으로 본다.
- ③ 입원. 징집등 불가피는 3년(5년)미만할 수 있다.
- ④ 묵시갱신(임대인이 만료 3월전까지 계약 갱신. 조건 변경이 없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)
- 4) 기타
- ① 기간. 임차료등 조정 안되면 시. 군. 구에 신청
- ②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 간주한다.
- ③ 이법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

#### 4. 농지 보전

#### 1. 농업진흥지역

- 1) 지정: 시. 도지사(농장 승인받아 지정한다.)
- 2) 구분
- ① 농업진흥구역: 농지가 집단화 농업목적에 필요
- ② 농업보호구역: 진흥구역 용수확보등 농업환경보호
- 3) 대상지역: 녹지(특별시-x). 관리. 농림. 자연환경
- 4) 지정절차: 심의 승인 지정. 고시 (농장은 녹지, 계관이 포함시 국장과 협의한다)
- 5) 행위제한
- ① 농업진흥구역: 농업생산. 농지개량
- ② 농업보호구역: 진흥구역 허용시설은 허용한다.
  - 관광농원(2만m'미만) 주말농원(3천m'미만)
  - © 태양발전설비(1만㎡ 미만)
  - ② 농업인 생활여건개선- 1천㎡(소매점등) 3천㎡(양수장. 공중화장실 등)미만
- 6) 농지매수: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어촌공사(감정평가금액)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다.

#### 2. 농지 전용

#### 1) 전용허가(농장)

허가(x)- ① 타법 허가의제 되는 협의 거친 경우

- ② 협의 거친 농지 ③ 전용 신고한 농지
- ④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복구
- ⑤ 하천관리청 허가받아 형질변경등
- 2) 전용신고(시. 군. 구)- 농업인 관련 시설만
- ① 농. 어업인 주택, 농수산물 유통. 가공시설
- ② 어린이놀이터. 마을회관등 농업인 편익시설
- ③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등 어업용시설

- 3) 전용협의(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농장과 협의)
- ① 주. 상. 공업을 지정시. 도시계획시설 결정시
- ② 계획관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
- ③ 녹지. 개발제한구역 안의 형질변경 허가시
- 4)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. 협의. 신고(시. 군. 구) -복구조건부 허가. 신고. 협의한다.(전용이 아니다)
- ① 허가
  -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- 7년(연장 5년)
  - ◎ 현장사무소- 공사기간
  - ◎ 토석. 광물- 5년(연장 3년)
  - ② 염해 농지에 태양발전설비- 5년(15년. 1회 3년↓)
- ② 협의: 국가. 지자체는 협의
- ③ 신고(6개월이내- 연장 안됨)
  -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
  - 현장사무소
  - © 썰매장. 지역축제장
- 5) 전용허가 취소: 할 수 있다.
- ① 2년이상 미착수. 착수후 1년이상 중단
- ② 공사중지등 조치명령 위반(취소하여야 한다)
- 6) 용도변경 승인: 전용된 농지를 5년내 다른 용도 사용시 시. 군. 구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3. 농지보전부담금

- 1) 납부의무자
  - -농지전용허가등 농지를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자 -타 용도 일시사용은 전용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다.
- 2) 분할납부
- ① 사유: ⑦ 산업단지. 도시개발사업. 관광단지등 ② 개인은 건당 2천만원/ 기타 4천만원 초과
- ② 기간: 4년(30%는 선납). 최종 납기는 준공일 이전
- 3) 선납: 전부.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 (납입조건부 허가할 수 없다.)
- 4) 환급: 허가 취소. 허가받지 못한 경우등
- 5) 감면: ~ 할 수 있다.(납부하지 않는다- x)
- ① 국가. 지자체 ② 중요산업시설 ③ 신고대상

# 부동산공법상 비교 정리할 사항

#### 1. 전부와 일부

- 1) 생각이 안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맞습니다.
- 2) 전부-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생략 가능한 시. 군(관할 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. 군)
- ② 전부 환지방식이면 소유자.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.

#### 3) 일부

-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.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~
- ② 토지상환채권은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~
- 2. 주민 의견청취 절차
- 1) 광역과 기본계획: 공청회(전문가 있음)/ 개최 14일 전에 신문 1회이상 공고/ 생략 안됨
- 2) 관리계획: 공람(전문가 없음)/ 생략 가능
- 3) 개발계획: 공람이나 공청회- 공람은 신문과 홈페이지 단, 10만㎡미만 이면 공보와 홈페이지
- 3. 주민 의견청취 기간(공람)
- 1) 대부분: 14일
- 2) 도정법의 정비계획. 관리처분계획: 30일
- 3) 건축법의 가로구역 높이제한: 15일
- 4. 지방의회 의견청취
- 1) 대부분 : 30일
- 2) 60일: ① 성장관리구역 ② 성장관리계획③ 정비기본계획 ④ 정비계획
- 5. 협의(관행장) 기간
- 1) 국계법의 광역. 기본. 관리계획. 성장관리. 기타: 30일
- 2) 의제사항: 대부분 20일(도정법 30일, 건축법 15일)
- 3) 입지규제최소구역: 10일
- 6. 계획 결정후 공람기간
- 1) 광역. 기본계획: 30일 이상
- 2) 관리계획: 기간 없음
- 7. 기득권 보호
- 1) 도시관리계획 결정- 진행중 사업 계속 진행 가능
- 2) 시가화. 수산자원 결정- 3개월내 신고하고 계속가능
- 3) 도시개발구역. 정비구역 지정 당시 진행중인 사업은 30일내 신고하고 계속가능
- 8. 심의 안하는 4가지
- 1) 경미한 변경 2) 단계별 집행계획
- 3) 개발행위 허가할 때 4)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
- 9. 허가등 처리기간
- 1)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기간: 15일
- 2) 도정법 사업시행인가 기간: 60일
- 3) 건축법 신고 수리 기간: 5일(협의시 20일)
- 4)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기간: 60일

#### 10. 재검토

- 1)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(광역. 기본. 관리계획)- 5년
- 2) 도시기본계획. 도시관리계획. 성장관리계획. 정비기본 방침. 정비기본계획. 리모델링기본계획- 5년
- 3) 투기과열지구- 1년
- 4) 광역도시계획- 재검토 안한다.
- 11. 지역. 지구. 구역- 지정 하여야 한다.(필수)
- 1) 방재지구- 최근 10년내 2회 이상. 인명피해 발생
- 2) 지구단위계획구역
- 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 완료되고 10년 경과(정. 택- 10년)
- ② 시가화조정구역. 공원에서 해제면적이 30만㎡ 이상 (시. 공-30)
- ③ 녹지가 주거. 상업.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㎡이상
- ④ 조례가 정하는 30만㎡이상
- 3) 기반시설부담구역
- ① 행위제한이 완화. 해제되는 지역(이해)
- ② 개발행위 건수. 인구증가율이 20% 이상(암기)
- 12. 실효고시
- 1) 공법상 실효시기: 다음날
- 2) 실효고시: 하여야 한다. 안 해도 다음날 실효된다.
- 3) 실효고시는 결정고시를 한 자가 하므로 국장은 관보, 지자체장은 공보에 한다.

#### 13. 일반법

- 1) 토지수용: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 이법 규정 외에 는 공취법을 준용한다.
- 2) 미집행시설부지 매수청구
- ① 매수가격 절차 등에 대해 이법에 규정이 없으면 공취법을 준용한다.
- ②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에 대해서 이법 규정 외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.
- 3) 조합

도시개발조합.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이법 규정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.

4) 주택상환사채

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이법 규정 외에는 상법중 사채발행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14. 주민등 제안

- 1) 도시.군관리계획 입안제안
- ① 기/ 지/ 산/ 폐/ 입
- ② 동의기준: 기- 4/5이상, 나머지 2/3이상,(입-
- ③ 반영여부 통보: 45일(1회 30일 연장)

)

#### 2)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

- ① 국가. 지자체.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
- ② 민간시행자 제안시 동의: 2/3이상
- ③ 반영여부 통보: 1월(1월 연장가능)

#### 3) 정비계획 입안제안

- ①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자에게
- ② 반영여부 통보: 60일 (1회 30일 연장가능)

#### 15. 수용 또는 사용시 사업인정.고시 의제시기

- ① 국계법- 실시계획·고시
- ② 개발법- 수용·사용할 세부목록 고시(중요)
- ③ 도정법- 사업시행·고시
- ④ 주택법- 사업계획승인.고시

#### 16. 미착수

1) 개발법: 실시계획인가 받고 2년내 착수안하면 (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.)

#### 2) 건축법

- ① 허가받고 2년(공장 3년)내 미착수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.(단, 1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다)
- ② 건축신고하고 1년내 미착수하면 효력 상실된다. (1년범위 연장가능하다.)
- 3) 주택법: 사업계획승인 받고- 취소할 수 있다.
- ① 5년내 착수안하면
- ② 분할시행- 최초 공구는 5년/ 최초외 2년(취소- x)

#### 4) 농지법

농지전용 허가. 신고하고 2년내 미착수(취소할 수 있다)

#### 17. 각종 허가 인가등 취소

#### 1) 취소 하여야 한다.

- ① 건축허가. 신고 취소
- 허가받고 2년(공장 3년)내 착수안하면
- ① 기간내 착수 하였으나 공사완료 불가능 인정시
- ◎ 착공전 경.공매 소유권 상실하고 6월내 착수안하면
- ◎ 건축신고하고 1년 착수안하면
- ② 농지전용 허가취소: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

#### 2) 취소할 수 있다.

- ① 주택조합 구성원이 법령을 위반시 조합 설립인가 취소
- ②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취소
- ① 사업주체가 승인받고 5년내에 미착수/ 분할시행은 최초공구만 5년
- ① 사업주체가 경매·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
- © 사업주체의 부도·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

위 ①. ©의 경우 주택분양보증이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. ③ 농지전용허가 취소 - 절대적 취소사유 이외 모두

#### 18. 각 종 제도의 실효시기 비교
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: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. 고시 되지 않는 경우(다음날)
- 2) 지구단위계획(주민 입안제안 사항만): 5년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(다음날)
- 3) 시가화조정구역: 시가화유보기간 만료(다음날)

#### 4) 도시.군계획시설 결정

- ①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(다음날)
- ②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,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: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
- ③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 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: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
- 5) 기반시설부담구역: 1년내 기반시설설치계획 미 수립시 1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된다.
- 6) 도시개발구역의 해제- 다음날(3실. 2개. 5330)
-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을 수립
  - ① 구역을 지정.고시후 3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
  -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고일(환지처분공고일) 다음날
- ②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 수립
  - → 구역을 지정.고시후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.고시(x)- (단, 330만㎡ 이상- 5년)
  - ① 개발계획을 수립.고시후 3년내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(단, 330만㎡이상- 5년)

#### 7) 정비구역의 해제

준공인가고시가 있는 날(관리처분계획 수립- 이전고시)의 다음날(이 경우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)

- 8) 건축 사전결정후 2년내 허가신청 않는 경우
- 9)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2년내에 허가신청 안하면 심의 효력 상실한다.

#### 19. 경미한 변경

- ① 0 0 0한 변경(조건을 붙이는 변경)
- ② 기간단축(연장-x)/ 범위 축소(확대-x)/ 감액(증액-x)
- ③ 대부분 10%. 1/10이하. 미만(이상. 초과-x)/ (정비기본계획. 사업계획승인: 20%이내)

반복학습이 합격의 비법입니다. 최대한 자주 반복해서 반드시 합격하시고 내년에서 우리 함께 공동중개 하는 것을 희망해 봅니다.~^^

-----<del>-</del>-29--